

깨끗한 온천, 건강을 지키는 온천, 국민과 함께하는 온천

# [ 2017 온천업무편람 ]



행정자치부



# | 목 차 |

<b>I. 총론</b> .....	<b>1</b>
1. 목적 .....	1
2. 정의 .....	1
2-1. 온천 .....	2
2-2. 온천우선이용권자 .....	7
2-3. 온천종사자 .....	15
2-4. 온천전문검사기관 .....	17
3. 책무 .....	22
3-1. 중앙행정기관(행정자치부) .....	22
3-2.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	22
3-3.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23
3-4. (특)한국온천협회 .....	23
<b>II.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b> .....	<b>25</b>
1. 온천의 굴착 .....	31
1-1. 온천굴착신고 .....	31
1-2. 토지의 원상회복 .....	42
1-3.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제한 .....	48
2. 온천발견 신고 및 취소 .....	52
2-1. 온천발견신고 .....	52
2-2. 온천발견신고 수리 .....	55
2-3. 온천발견신고 취소 .....	61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	68
4. 온천개발계획 .....	75
4-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변경·취소 .....	75
4-2. 온천개발면적 .....	93
4-3. 타법과의 관계 .....	93
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	103
6.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	108

<b>Ⅲ.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b> .....	<b>111</b>
1. 온천의 이용허가 .....	113
1-1. 온천의 이용허가 .....	113
1-2. 일시이용 허가 .....	119
1-3.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	126
2. 온천의 보전·관리 .....	131
2-1.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	131
2-2.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	133
2-3.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	134
2-4.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137
2-5.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	140
2-6. 온천의 공동급수 .....	141
2-7. 기타사항 .....	145
<b>Ⅳ. 수수료 및 벌칙 등</b> .....	<b>147</b>
1. 수수료 .....	149
2. 벌칙 .....	150
3. 과태료 .....	152
<b>Ⅴ. 참고 사항</b> .....	<b>155</b>
1. 온천전문검사지침 .....	157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	199
3.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211
4. 온천법령집 .....	219
<input type="checkbox"/> 온천개발절차별 관련법령 .....	27
<input type="checkbox"/> 온천개발절차별 주요내용 .....	29

법령해석 1. 온천우선이용권자(07-0364) .....	9
법령해석 2. 온천우선이용권자(08-0041) .....	10
법령해석 3. 온천우선이용권자(08-0430) .....	13
법령해석 4.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 등(08-0253) .....	36
법령해석 5. 토지의 굴착허가 여부 관련(11-0706) .....	40
법령해석 6.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관련(16-0565) .....	65
법령해석 7.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이후(14-0141) .....	86
법령해석 8. 온천개발계획 승인 부칙 적용(10-0199) .....	88
법령해석 9. 온천개발계획 승인 적용 법률(16-0444) .....	90
법령해석 10. 온천일시이용허가 유효기간(08-0022) .....	122
법령해석 11. 온천일시이용허가 양도(08-0437) .....	124
법령해석 12. 온천업종 오인언어 사용(06-0344) .....	130
법령해석 13. 온천 공동급수 적용여부(08-0199) .....	143
온천지침 1.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없을 경우 .....	8
온천지침 2. 온천종사자의 범위 .....	15
온천지침 3.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내 지하수 개발 관련 .....	50
온천지침 4. 온천발견신고공 이격거리 .....	58
온천지침 5. 온천개발면적 산정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	62
온천지침 6.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승인의 신속한 이행 .....	78
온천지침 7. 온천개발계획 내용이 불승인에 해당될 경우 처리방법 .....	78
온천지침 8. 2010년이전 지정 온천지구의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승인 방법 .....	78
온천지침 9. 온천개발면적 또는 시설의 증감시 적용례 .....	80
온천지침 10. 타법에 맞는 온천개발계획 수립 .....	94
온천지침 11. 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온천지구 운영 .....	104
온천지침 12. 온천이용허가와 온천자원관리 .....	115
온천지침 13. 허위광고의 예 .....	127
온천지침 14. 온천자원관리 철저 .....	132
온천지침 15. 온천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시 .....	136
온천지침 16. 온천관련 허가시 금지사항 .....	142
온천지침 17. 지방자치단체 공동급수 운영방안 .....	142
참고 1. 온천공 소유권 .....	8
참고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주요내용 .....	16
참고 3.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현황 .....	18
참고 4. 행정행위의 실효(失效) .....	42
참고 5.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	44
참고 6. 2010년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허가 대상 확대 취지 .....	51
참고 7.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과 숙박업 정의 .....	119
참고 8.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황 .....	145
참고 9.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152

# I. 총론

---

1. 목적

2. 정의

3. 책무



## 1 목 적

**법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 온천업무편람은 온천업무 추진별 법령근거, 세부사항, 절차, 관리방법 등을 해석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 2 정 의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3. "온천중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飲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시행령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sub>3</sub>-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sub>2</sub>Cl<sub>4</sub>)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sub>2</sub>HCl<sub>3</sub>)은 0.03mg/L 이하일 것



## 2-1. 온천

○ 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이상의 온수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지하로부터 솟아남'은 자연적 용출을 의미하지만, 인공적으로 인력이나 동력을 이용한 것도 포함함 → 어느 깊이에서 펌프의 힘으로 온천수를 위로 올렸다고 해도 그 깊이에서 온천수는 자연적으로 용출하고 있음을 의미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천의 성분 기준을 모두 갖추고 음용·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함

### ① 질산성질소는 10mg/L 이하일 것

- (노출경로) 무기비료 사용, 부패한 동식물, 생활하수, 공장폐수에서 발생
- (특징) 수질 오락 지표, 물의 오염지표, 수역에서 부영양화 지표로 사용되며, 단백질 같은 질소 화합물이 부패, 발효, 산화 등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서 화학적으로 불활성적이지만, 미생물 작용으로 환원됨

### ②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이하일 것

- (노출경로) 유해화학물질로서 무색의 액체이며 금속 세정제로 이용 후 배출
- (특징) 무색투명의 액체, 불연성, 물에 난용,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냄새가 나며, 금속기계부품의 세정, 유기용제, 살충제, 프레온 가스제조 등에 사용

### ③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이하일 것

- (노출경로) 금속세정제, 드라이클리닝 용제, 소화제 등으로 이용 후 배출
- (특징) 유기염소계 용제로서 휘발성 물질로 무색 투명의 액체로 난용성이며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냄새가 나며, 금속기계부품의 세정, 유기용제, 살충제, 프레온 가스제조 등에 사용됨. 표류수에 혼입될 경우 수 분~수 시간내에 대기중에 휘산하여 분해되고, 지하에 침투되어 지하수 중에 장기간 잔류함

※ 자료출처: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

○ 온천의 성분·수질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수행

- 음용 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 목욕용 기준 : 온천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기준(별표2)을 적용받지 않음

구 분	온천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원 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무검출 - 색도 5도 이하 - 탁도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5.8~8.6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l 이하
욕조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1ml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함	-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 이하 - 탁도는 1.6NTU이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

####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C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납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불소는 1.5mg/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비소는 0.01mg/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셀레늄은 0.01mg/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수은은 0.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시안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크롬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질산성 질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카드뮴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붕소는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 브롬산염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하. 우라늄은 30 $\mu$ g/L를 넘지 않을 것(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다이아지논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파라티온은 0.06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카바릴은 0.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벤젠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톨루엔은 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타. 에틸벤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파. 크실렌은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거. 사염화탄소는 0.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더. 1,4-다이옥산은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클로로포름은 0.08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포름알데히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가. 경도(硬度)는 1,000mg/L(수돗물의 경우 300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동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 아. 아연은 3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자. 염소이온은 250mg/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mg/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 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 망간은 0.3mg/L(수돗물의 경우 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mg/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알루미늄은 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3>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제11조관련)**

**1. 욕수의 수질기준**

가. 원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ℓ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조수(浴槽水)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1mℓ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수질검사방법**

가. 원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르고 욕조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총대장균군 시험방법 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욕조수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에 채수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다. 총대장균군 시험용 시료는 멸균된 100mℓ 이상의 용기를 이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고 한번 채취된 시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온(10℃이하)의 상태로 6시간 이내에 검사실로 운반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시료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을 시작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

**I. 욕수의 수질기준**

**1. 원수**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mℓ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욕조수

-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균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균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 3.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

화학적 산소 요구(COD)(mg/L)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원수	욕조수		
2 이하	4 이하	7.8 ~ 8.3	1,000 이하

## II. 수질검사방법 등

- 1.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다만, 욕조수의 대장균군 검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에 따른다.
- 2. 욕조수의 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의 채수 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 3. 욕수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용은 1개의 용기에 2ℓ 이상을 채취하여야 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 멸균된 100mℓ 이상의 용기에 채취하되, 채취된 시료는 섭씨 1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6시간 이내에 검사기관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 2-2. 온천우선이용권자

-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권자
- 법률 제7856호(2006.3.3.개정) 시행 전(2006.7.1.) 온천발견신고 당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며,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권자도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없음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라는 요건과 함께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만이 해당된다. (법제처 해석 07-0364)

☞ 온천지침(1)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없을 경우 】**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온천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신속·원활한 온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를 “차순위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할 수 있음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내 토지굴착에 대한 우선 허가
- 온천의 이용에 대한 우선 허가
-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알선 등 필요한 지원
-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법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용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1] 온천공 소유권**

- 온천법에서는 온천권 등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온천공은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의 것임.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령해석 1 : 온천우선이용권자 (법제처 해석 07-0364)

[질의요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인지?

[회 답]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님

[사 유]

- 「온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법령문장에 있어서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위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미 인정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법적 지위가 신·구 소유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되는 것입니다.
- 우선,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①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②그 신고가 같은조제2항에 따라 수리된 자로서 ③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건 질의에 있어서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며, 그 결과 토지소유권 이전에 수반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라는 요건과 함께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권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법령해석 2 : 온천우선이용권자 (법제처 해석 08-0041)

[질의요지]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가 최초 온천발견 신고를 한 신고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 받으면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회 답] 최초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으므로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 유]

-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하 “온천발견신고인”이라 함)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에 있는 토지소유권자가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가 함께 이전된다 [법제처 2007. 11. 21. 07-0364,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해석례]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 사안은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 그래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면서 동시에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는바, 온천발견 신고인이 아닌 자로서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나중에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된다는 주장은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 아닌 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동시요건 문언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중의 목욕용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권자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온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11호 서식은 소재지, 온천발견상황,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상황,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상황, 온천현황, 이용현황, 온천자원보전관리, 온천자원보전관리조치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발견상황란에서 발견신고일자, 신고수리일자, 발견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에게는 특별한 법적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는 경우에 굴착허가나 온천 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온천을 발견한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을 등재하는 등 필요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온천법령 어디에도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변경절차나 그 지위승계의 허용가능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온천발견신고인의 지위를 승계시키기 위하여 온천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시장·군수에게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변경이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 한편, 온천법령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 제18조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인에 대하여 토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 허가하거나 온천 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26. 개정 이후의 「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혜택을 삭제하고 그 혜택을 처음(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 제18조)에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여하고, 그 후 현재까지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부여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온천의 우선 이용 혜택을 받는 자를 처음에 온천발견신고인에서 최종적으로 온천발견신고인이며 동시에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자로 한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법률을 개정한 입법취지는,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온천발견신고인에 한하여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을 부여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종전에 온천발견신고인에게 부여된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이 없어진 현재의 제도 내에서 명시된 규정도 없는데 온천발견신고인의 법적 지위가 승계된다고 그 법적 지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최초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으므로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법령해석 3 : 온천우선이용권자 (법제처 해석 08-0430)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온천법”이라 함)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회 답]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음

[사 유]

-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합니다.
- 온천우선이용권자와 관련된 온천법령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1. 4. 27. 시행된 것과 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본문에서는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고, 단서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하였으며, 개정 온천법 제23조에서는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용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권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라고 규정한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개정 온천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규정인데,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는 자(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등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을 경우 그 토지를 이전 받은 자가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개정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를 추가하면서 부칙에 아무런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둔 바가 없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어 명시적으로 법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바가 없다면, 법률 시행일 전에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에 대하여 온천우선이용허가권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온천의 적정한 개발을 도모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 위 개정 규정의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 후의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므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는 것이고, 개정 규정 시행 후로 한정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승계받아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2-3. 온천종사자

- 온천종사자는 법제16조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을 하는 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유원시설업을 하는 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업을 하는 자
  - 기타 건축법시행령, 화장품법, 약사법에 의한 양어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의약외품 및 일반의약품의 제조 등 사업을 하는 자

### ☞ 온천지침(2)

#### 【 온천종사자의 범위 】

- 온천공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급계약을 체결 후 온천수를 공급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온천종사자”에 해당함
  - 온천공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온천을 이용하고자 할때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허가 신청시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영 제17조제1항제4호)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飲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시행령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온천종사자 교육 이수

- 관련법령 : 법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시행규칙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법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2) 주요내용**

1. 교육실시 기관 :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2. 교육시간 : 연간 4시간
3. 교육내용
  - 온천법령 해설, 온천기준과 온천자원, 온천개발절차 및 규제사항, 온천검사·온천이용허가·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
  -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 온천행정 등
4. 행정기관 협조사항
  - ① 교육유예자 명단 등 통보(시장·군수 → 협회장) : 교육예정일 10일전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 법령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예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 기타 시장·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1년의 범위 안에서 교육시기 유예 가능

- ② 교육 갈음 대상자(교육교재 숙지) 명단 등 통보(시장·군수 → 협회장)
  - : 교육예정일 10일전
  - 도서·벽지 등 온천종사자로서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교육대상자 변동(온천이용허가사항 등)시 통보(시장·군수→협회장)
  - : 변동발생 후 15일 이내
  - 신규 온천이용허가, 허가자의 지위승계신고, 이용허가취소 등
- ④ 교육대상자의 소집 및 교육장소의 확보 지원 등(관할 지역 시장·군수)
- ⑤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교육 종료 후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 보고(협회장→시장·군수)
  - 불참자 사실관계 확인 후 온천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시장·군수)

## 2-4. 온천전문검사기관

###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 신청기관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행정자치부는 관련서류 등 검토 후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관보게재)

###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온천조사·검사 종류

검사시기	종 류	관련법령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부존조사	법12조③ 영13조①-4
온천발견신고 수리시	온천공조사	법21조② 규칙13조①② [별표5]
	온천공영향조사	규칙13조②-3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변경,해제)시	온천자원평가조사	법10조 영7조 규칙5조
최초 온천이용허가시 이용허가일부 5년마다	정기온천자원조사 · 성분검사	법19조① 법24조② 규칙15조①
매 1년마다	수질검사 · 성분검사(유황, 유리탄산)	법19조 규칙12조 [별표4]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취소

- 법정판결 또는 심의 등에 의해 보고서상 허위 내용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는 반드시 행정자치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제7조제4항 제1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제7조제4항 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7조제4항 제3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제7조제4항 제4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제7조제4항 제4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7조제4항 제5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7.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제7조제4항 제6호	등록취소	

[참고3]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현황 (2017.1.1. 현재)

연번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비고
1	한국농어촌공사	정 승	전남 나주시	'00.10.10.	061-338-5797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대전 유성구	'00.10.10.	042-868-3085
3	한국중앙온천연구소	이종태	서울 금천구	'00.12.28.	02-2027-3470
4	(주)하나 엔지니어링	이정락	경기 안양시	'00.12.28.	031-345-0507
5	(주)한국건업엔지니어링	성종수	경기 광명시	'00.12.28.	02-894-2472

연번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비고
6	(주)세기종합기술공사	민봉기	세종특별자치시	'00.12.28.	044-863-1025
7	중앙컨설팅트(주)	김해종	서울 강남구	'08.8.26.	02-2156-6031
8	(주)옥수개발	이영일	서울 송파구	'12.7.23.	02-412-8944
9	(주)진산	김봉상	제주특별자치도	'12.12.3.	064-756-8868
10	(주)지오엠	김근수	경남 김해시	'15.2.6.	055-327-2709

○ 관련법령 : 법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시행규칙 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법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을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온천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다.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2. 장비

### 가. 물리탐사 및 검증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 다. 수위측정장비

### 라. 수량측정장비

###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전문인력 및 장비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예의 등재 및 관보예의 게재

2.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미 교부받아 사용 중인 등록증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2. 장비
3. 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제7조제4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7조제4항제3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제7조제4항제4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4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5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7.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6호	등록취소	

### 3 책 무

**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법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중앙행정기관(행정자치부)

-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지도관리
- (특)한국온천협회 승인 및 지도관리
- 국민보양온천 지정승인 등

#### 3-2.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 온천발전지원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고시, 온천공보호구역 승인
- 온천개발계획 승인, 국민보양온천 지정 등

### 3-3.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온천발전지원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굴착허가, 온천발견신고수리, 동력장치설치허가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공보호구역 고시
- 온천개발계획 및 온천원보호지구 신청, 온천이용허가
- 정기온천자원조사(5년마다), 수질 및 성분검사, 출입검사 등

### 3-4. [특]한국온천협회

#### < 현황 >

- ▶ 설립인가일 : 2007. 7. 11.
- ▶ 사무실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 705호(당주동, 영진빌딩)
- ▶ 전화번호 : 02-720-5004 (팩스 : 02-723-5003)
- ▶ 임원구성 : 24명(회장1, 명예회장1, 고문3, 부회장2, 감사1, 이사16)

-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
-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 위탁하는 온천자원조사·연구사업(수질·성분검사 등)
- 온천자원 관측시설 설치, 온천관리정보체계 구축
- 온천발견신고자, 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종사자의 위탁사업
  - 온천부존조사, 온천공(영향)검사,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수질)검사 등
- 관련법령 : 법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시행령 제21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법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3.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령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절차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Ⅱ.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

1. 온천의 굴착
2. 온천발견신고 및 취소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4. 온천개발계획
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6.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 □ 온천개발절차별 관련법령

<p><b>1. 온천징후조사·굴착</b> (개 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2조(굴착허가),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제30조(청문)</li> <li>영 제13조(굴착허가 신청),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li> <li>규칙 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 별지 제3호 및 3호의2 서식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 별지 제5호 서식</li> </ul>
<p><b>2. 온천발견신고</b> (발견자 ⇒ 시장·군수·구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li> <li>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 별지 제10호 서식</li> </ul>
<p><b>3. 온천발견신고 수리(受理)</b> (시장·군수·구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2조(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 등)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li> <li>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li> </ul>
<p><b>4-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b> (시장·군수 신청 ⇒ 시·도지사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li> <li>영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li> <li>규칙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1호의2 서식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고시 등)</li> </ul>
<p>또는</p>	
<p><b>4-2. 온천개발계획 수립·승인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b> (시·도지사 승인·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li> <li>영 제7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li> <li>규칙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고시 등) 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변경신청) -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2호의2 서식 제6조(온천개발기준의 산정기준) - 별표 1의3</li> </ul>



### 5. 동력장치 설치 허가

(온천종사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법 제14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
- 영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 규칙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 별지 제4호 서식  
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 6.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종사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 영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 규칙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 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의2(온천표시) - 별표 2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 별표 3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 별표 4, 별지 제9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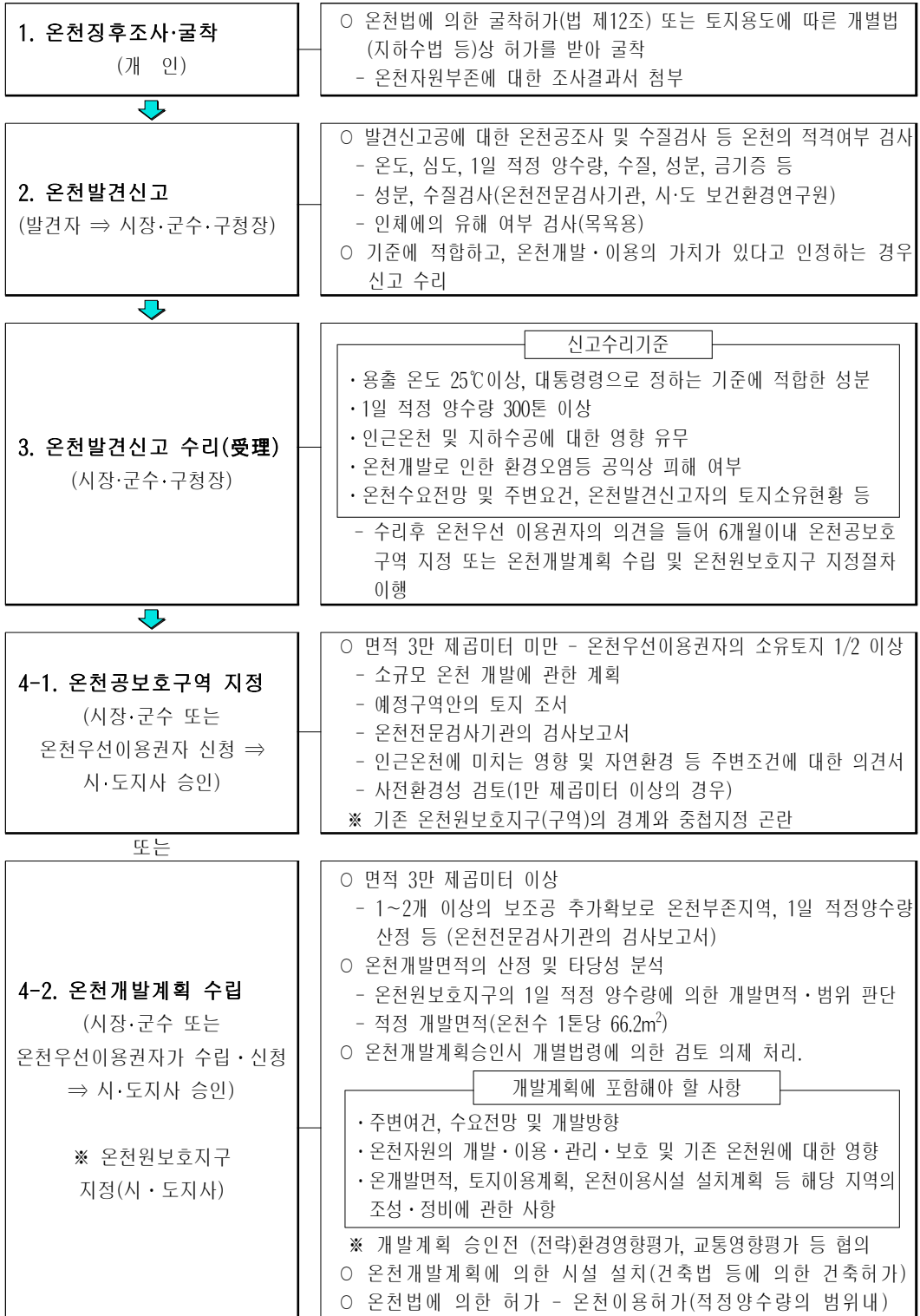


### 7. 온천자원의 보전 관리 및 관측·정보체계 구축

(한국온천협회,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 제25조(출입검사 등)
- 영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 규칙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 별지 제11호 서식  
제17조(허가증의 교부) - 별지 제12호 서식  
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 별지 제13호 서식

## □ 온천개발절차별 주요내용





**4-3. 개발지역 토지용도변경**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온천원보호지구지정시 착안사항

- 개발계획예정지 경계로부터 1km이내 지역
  - 도로, 하천, 건축물 등 주요 지형지물 중심
  - ※ 기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경계와 중첩지정 곤란
- 지구지정 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시
  -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등이 명시된 지형도면 (축척 1:500~1:1,500)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 도시지역 -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유원지 시설 결정” 의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함
- 자연공원구역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마을지구”로 용도변경
-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전 토지용도 변경완료



**5. 동력장치 설치 허가**  
(온천종사자 ⇒ 시장·군수·구청장)

- 수중모터펌프 설치시 자동수위조절봉을 기준수위로부터 100 미터에 설치 봉인(신규 굴착공)
- 수문관측시설 설치(수위측정관, 유량계, 온도계 등)



**6.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종사자 ⇒ 시장·군수·구청장)

- “온천수이용허가기준”수립·운영- 관리조례제정
- 필요시 책임급수 체계망 구성·운영
- 온천이용허가일로부터 매5년마다 정기온천자원조사



**7. 온천자원의 보전 관리 및 관측·정보체계 구축**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온천협회)

- 적정 양수량, 수위변동, 수질, 성분(부존범위, 전체 적정 양수량)
- 유황, 유리탄산 성분 매1년마다 / 그 외 성분 매5년마다
- 수질 매1년마다
- 온천이용허가일로부터 매5년 이내 정기온천자원조사
-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 별로 하나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 설치
- 설치된 관측 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 상시 관측
- 한국온천협회에 위탁

## 1 온천의 굴착

## 1-1. 온천굴착신고

## &lt; 개요 &gt;

- ▶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 포함(※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
- ▶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함
- ▶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토지굴착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해야 함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굴착허가의 신청

- 온천 굴착허가 신청시 준비서류
  - ① 토지굴착허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지하수 굴착도중 온천발견시(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 ②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인 경우)
    -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 기재
  - ③ 굴착예정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④ 굴착계획서(굴착단면도 포함) 및 복구계획서(각각 설계도서 첨부)
  - ⑤ 온천자원부존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 지형, 수계 수문조사
- 지질 및 지질구조 조사(물리탐사-전기비저항 수직탐사 등)
- 인근 지역의 온천자료 검토
- 온천부존 여부 및 굴착 계획(심도, 구경, 케이싱 내역)

⑥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등 ※ 증굴(용출구를 확대하거나 심도를 증가하는 것)인 경우 : 토지굴착허가변경 신청서, 굴착 및 복구계획서(증굴 설계도서)

- 온천굴착신고 수수료 : 신규굴착(공당 6만원), 증굴(공당 3만원)
- 굴착허가 : 허가일로부터 1년(※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내 연장가능)
- 굴착동의 유효기간 : 1년 이상(※ 연장시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

## □ 온천굴착 허가시 검토사항

- ① 굴착토지 소유여부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굴착신고서 접수시 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음
  - 동의하지 않을 시 소유권 증명서류 첨부
- ② 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굴착사용동의서 확인
- ③ 공별 1일 적정 양수량 기준 준수
  - 온천발견신고공 : 300톤 이상, 보조공 : 150톤 이상

### <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 기존 온천공을 폐공하고 대체(代替)공으로 신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공에 대하여는 종전의 허가량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적정 조치
- 대체공의 굴착공의 검사결과 1일 적정 양수량이 50톤이상 150톤미만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특히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 조치바람
- ※ 온천수량의 제한은 경제성 검토뿐만 아니라 온천수의 양수량이 일정한 적정량 미만일 때 온도의 순간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작용(예 : 온도 미달공이 온천공으로 둔갑될 우려) 문제가 있으므로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정량 기준이상의 양수량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

- ④ 보조공 굴착신고시 온천우선이용권자인지 여부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닌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동의서 첨부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순위 우선이용권자(온천발견 신고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동의서 첨부
- ⑤ 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자원 고갈(수위강하) 여부
- ⑥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자연생태계 영향 여부
- ⑦ 신규공인 경우 온천발견신고 수리 가능여부도 고려
  -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000m이상 이격 여부
    - ※ 기존 지구와 지구면적이 중첩되지 않도록 지정
  - 굴착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 도시계획사업이나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 □ 관련법령

**법제12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意的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13조(굴착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2.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는자로 한정한다)
  2. 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각각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
- ③ 제2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일 현재 굴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법령해석 4 :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 등 (법제처 해석 08-0253)

[질의요지] 가.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이하 “구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나.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해당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이후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온천발견 신고인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 유]

가.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르면 “온천우선이용권자”라 함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되,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용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온천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을 신청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신고 받은 시장·군수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을 검사한 결과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온천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동意的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온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제1호),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제2호), 굴착 및 복구계획서(제3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제4호)를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굴착사용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동意的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현행 「온천법」 상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부여되는 법령상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당 온천개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음에도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직접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이용허가에 있어 우선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온천발견신

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념을 정의한 현행 「온천법」 제2조제2호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온천법」 제2조제2호 단서는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토지소유권자가 다른 자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미 인정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법적 지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관하여 규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 즉, 위 「온천법」 제2조제2호 본문의 규정은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이면서 신고 수리 당시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호 단서는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에 토지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본문에 따라 이미 인정된 온천우선이용권을 변경된 토지소유권자가 갖게 됨을 규정한 것이고, 온천발견 신고인(신고가 수리된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기만 한 자가 나중에 토지를 소유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동시요건 문언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5. 9. 회신 08-0041 해석례).
- 또한 「온천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인에 대하여 토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융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26. 개정 이후에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혜택을 부여하였고(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 그 후 현재까지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온천발견 신고인에 한하여 온천 우선이용 허가의 혜택을 부여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 등 혜택의 수혜자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한 것으로, 현행법상 그 혜택의 수혜자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범위 또한 법령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이후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당시에는 해당 온천발견 신고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현행 「온천법」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위와 같이 온천우선이용 등 혜택의 수혜자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온천법」이 개정되면서 구법상 지위를 유지·보호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둔 바 없었음), 또한 위 본문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이후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다. 질의 내에 대하여

- 「온천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를 굴착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이기만 하면, 최초의 온천 발견을 위한 것이거나 온천 발견 후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한 것이거나 굴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굴착허가의 대상자를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온천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우선하여 토지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가 그 신고의 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질의 가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온천법」 상의 온천우선이용권자 즉, 온천발견 신고인으로서 그 신고의 수리 당시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를 소유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온천발견 신고인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5 : 토지의 굴착허가 여부 관련 (법제처 해석 11-0706)

[질의요지]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호(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회 답]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호(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사 유]

-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온천법”이라 함) 제8조와 구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온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르면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기존 온천의 용출량·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같은 항 제2호는 기존 온천공과 굴착하려는 공의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문언상 구 온천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이 경우”라 함은 같은 항 전단에서 말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시장·군수가 토지굴착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용출목적의 토지굴착허가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온천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장·군수는 토지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토지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미리 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1-2. 토지의 원상회복

### < 개요 >

-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거나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  
(※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 준용

### □ 원상회복 의무

- 굴착한 온천공에서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한 때
-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때
-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내 온천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 [참고4] 행정행위의 실효(失效)

-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함
  - ① 일단, 적법하게 발생된 효력이 실효사유에 의하여 소멸되고
  - ② 하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 ③ 실효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무효와 다름
- 실효사유 : ① 행정행위 대상의 소멸
  - ②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 ③ 목적의 달성
- 실효의 효과: 행정행위의 실효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그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효력 소멸

## □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 납부대상 : 토지굴착허가신고자, 온천발견신고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자, 지하수개발허가신고자
- 납부시기 : 토지굴착허가서수령시, 온천발견신고시, 온천이용허가신고시, 지하수개발허가신고시
- 납부방법 : 현금, 보증서, 유가증권 등
-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 온천공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 및 되메움 비용과 그 밖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
- 예치기간
  - 토지굴착허가 : 토지굴착허가일부부터 온천발견신고일 또는 원상회복종료일까지
  - 온천발견신고 : 온천발견신고일부부터 온천발견신고수리일까지  
※ 온천발견신고가 불수리되는 경우 원상회복종료일까지
  - 온천이용허가 : 온천이용허가일부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지하수개발허가 : 지하수개발허가일부부터 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지하수법시행령 준용)

### < 지하수법 >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⑦ (생략)

○ 이행보증금 반환

- 원상회복의무자가 원상회복을 완료했을 때
-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경과 되는 때

○ 이행보증금이 부족액 및 잔액 처리

- 시장·군수가 원상회복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 이행보증금이 부족하면 추가 청구
- 잔액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참고5]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7호

지하수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82호 2005.12.21)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별표의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

1. 이행보증금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상요율은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60-1, 2006.5.25)] 에 의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은 상부보호공의 제거, 수중모터펌프 등의 제거, 외부케이싱 인발·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부보호공의 제거

상부보호공의 헐기 및 부수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어 상부보호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개소당 단가 : 184,306원

나. 수중 모터펌프 등의 제거

공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모터펌프 등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격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수중 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규격별 단가

- 수중 모터 펌프 5.5kw 이하 : 250,656원
- 11kw 이하(378,410원), 22kw 이하(506,163원),
- 30kw 이하(589,715원), 30kw 이상(673,267원)

다. 외부케이싱 인발·제거

공벽붕괴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외부케이싱을 인발·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m당 단가에 케이싱 설치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19,425원

3. 되메움 비용은 투수성 또는 불투수성물질을 주입하여 공내를 되메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m당 단가에 재료별 되메움 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구분	구경(mm)	m당 단가(원)	구분	구경(mm)	m당 단가(원)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모래 등)	50 이하	5,619	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시멘트 등)	50 이하	5,880
	100	5,737		100	6,781
	150	5,933		150	8,282
	200	6,208		200	10,384
	250	6,561		250	13,087
	300	6,993		300	16,389
	350	7,503		350	20,293
	400	8,092		400	24,797
	450	8,759		450	29,901
	500	9,505	500	35,606	

4.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지표부 처리, 인력되메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표부처리

되메움공 상부에 30cm 두께로 몰탈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54,631원

나. 인력되메움

지표부처리 상부구간(70cm)을 토사로 되메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3,867원

5. 특수한 형태의 지하수 개발·이용공(집수암거,장심도 등)의 이행보증금 산정 기준은 개발·이용자가 개발·이용시설 설계서 및 공사비 산출서, 원상복구 설계서 및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받아 실비용으로 허가자가 결정한다.

## □ 관련법령

**법제13조(원상회복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시행령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 허가를 받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주택도시보증공사

바.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4.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 온천발견신고일부터 온천발견신고 수리일까지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회복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제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온천공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1-3.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 < 개요 >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할 경우 예외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2호))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5조))

## □ 토지굴착 제한의 취지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인근지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내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이 아니더라도 토지를 굴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 온천원에 영향을 주어 귀중한 온천자원이 고갈, 변질 등의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토지굴착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

## □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 이외의 토지굴착

- 온천법 제12조(굴착허가)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토지굴착 행위로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굴착하는 행위
  - ② 지역주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는 행위 등을 말함

## □ 온천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 굴착행위의 금지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 굴착행위의 심도 등의 제한
- 기타 온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저지·제한하는 행위 등
- 명령권자는 토지굴착으로 인한 온천원에 저해요인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임

## □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경우

- 공공시설의 업무용
- 농업용수 공급용
-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탕, 샤워시설 등)



○ 1일 양수량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온천지구내 음식점 등 소규모 영업장의 지하수 이용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상수도 이용 조치

### ☞ 온천지침(3)

#### [온천원 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내 지하수 개발 관련]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내에서 지하수(섭씨 25도 미만의 물) 개발의 경우는 온천법시행령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되, 온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영업용의 경우는 개발허가 제한(이용량 1일 30톤 미만의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의 의미에 ‘영업용 용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 영업용 용수는 2010년 시행령 전부개정 취지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가 이용하는 용수를 의미함

※ 온천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동 지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이행중에 있고 신고수리된 지역에서 온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이용권 등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한 개발자가 온천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온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조치

●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목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천법령에 의한 토지굴착허가를 받아 채수하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의 관계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지하수개발 허가일로부터 1년마다(기간종료 30일 이내)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기 바람

※ 당해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내에서 지하수개발 허가시 위의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허가 조치

## [참고6] 2010년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개발허가 대상 확대 취지

- ① 온천원보호지구 내에서 온천시설 외의 용도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공공시설이나 농업용수로 제한되어 있어 온천원보호지구 내에서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 ② 영세사업자 등이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③ 따라서, 온천원보호지구 내에서 소규모 지하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편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관련법령

**법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6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법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시설의 업무용
2. 농업용수 공급용
3.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온천발견신고 및 취소

### < 개요 >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가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2조))

### 2-1. 온천발견신고

#### □ 온천발견

- 온천발견이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법 제2조에서 정의한 온천의 발견을 의미함

#### □ 신고방법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의 용출 또는 채수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 보고서 제출
- 온천발견 신고시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천공의 지름, 온도, 적정 양수량 등을 기재하고,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별지10호서식)

#### □ 관련법령

**법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시행규칙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천공이 발견된 위치
2. 발견경위
3. 발견내용: 온천공의 개수, 지름과 깊이, 온도 및 1일 적정 양수량
4. 발견지역의 여건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온천공의 붕괴 등으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수리된 신고인이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 및 온천개발예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하여야 한다.

## 2-2. 온천발견신고 수리

### < 개요 >

-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시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검사결과와 당해 온천이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를 수리(受理)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인이 부담, 신고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 □ 온천발견신고 수리절차

- ① 온천발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 신고공 존재여부
  - 신고공이 있는 토지 소유여부(등기부 확인)
  - 온천발견신고 수리 제한사항 검토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서 반려**
- ② 온천공검사보고서 확인
  - 온천발견신고자의 검사비용의 납부 확인
  - ⇒ 검사비용 미납시 발견신고서 반려

####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5>

#### 온천공조사방법 및 조사보고서 작성항목

##### 1. 온천공 조사방법

- 가. 물리검층, 온도검층
- 나. 단계양수시험
- 다. 장기양수시험(48시간)
- 라. 성분검사

##### 2. 온천공조사보고서 작성항목

- 가. 개요(위치 및 검사범위 등)
- 나. 지형 및 지질
- 다. 검사공 현황 및 온도검층

- 라. 물리검층과 온도검층
  - 마. 단계양수시험
  - 바. 장기양수시험
  - 사. 양수시험시 수온·간이수질변화
  - 아. 성분분석 및 해석
  - 자. 종합결과(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성분 등)
  - 차.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첨부
- ※ 인근에 공이 있는 경우 인근공과의 영향유무 조사내용 포함

#### <온천공검사기관 선정 및 현장검사 입회>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서류 접수시 온천공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온천발견을 위한 시추·굴착을 하지 아니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인지 확인하여야 함 (※온천부존조사를 실시한 검사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온천공 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온천공 검사시에는 시·군·구 관계공무원이 현지 입회하여 온천수 시료 봉인 및 양수온도 확인
  - 최초 온천발견신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온천공 검사인 경우,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온천협회 관계자 입회하여 검사하여야 함
- ※ 최초 온천공검사를 시행하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은 검사실시일자, 검사인력, 검사일정(시간단위)을 검사일 15일전까지 온천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③ 온천발견신고 수리(접수후 10일 이내)

- 검사결과 및 온천의 적정성, 지리적 여건,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지정 및 개발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수리

#### <온천의 개발·이용가치 유무의 판단기준>

-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 1일 적정 양수량의 판단은 48시간 동안 양수량 중 마지막 24시간 동안 양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수위강하는 기준 수위로부터 100m이내

-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 수위강하량의 95% 회복을 고려
-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공익상 피해 여부
- 온천수요 전망 및 주변여건
-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 경계가 중첩되지 않는 한 수리가능
- ※ 온천발견신고자는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온천발견 신고수리시까지 발견신고공 및 인근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소유여부 검토)

**<인근 온천공과의 영향유무 판단기준>**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온천공영향조사 결과에 의해 판단
- 기존공(온천, 지하수)과 신규공과의 수위 영향정도를 조사
- 신규공 또는 보조공인 경우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여 2%이상인 경우 원상회복
- ※ 온천공 영향조사의 범위는 수평거리 300m이내가 적정하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판단
- [참고] 온천공영향조사 비용부담 권고
  - 수평거리 300m 이내 : 신규 온천공소유자 100%부담
  - 수평거리 300~600m이내 : 신규 온천공소유자와 민원인 각 50%부담
  - 수평거리 600m 이상 : 민원인 100%부담

- ④ 신고수리 후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온천개발에 대한 의견제출
  -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용도 변경
  -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출

**□ 온천발견신고 수리제한 및 반려사항**

-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 ☞ 온천지침(4)

### 【온천발견신고공 이격거리】

- 온천발견신고지역이 기존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와 인접한 경우는 기존지구(구역)와의 중첩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견신고공이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최소한 1km이상 이격되어야 함
- 발견신고공이 위치한 토지가 아래 지역일 경우
  - 개발제한구역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온천원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을 때, 선순위자 신고공이 적합한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다음 순위이하 신고서는 반려
  - 선순위자 신고공이 부적합일 때 선순위자 신고서 반려
-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 온천발견신고자가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 □ 관련법령

- 법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규칙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온천공이 발견된 위치
- 2. 발견경위
- 3. 발견내용: 온천공의 개수, 지름과 깊이, 온도 및 1일 적정 양수량
- 4. 발견지역의 여건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온천공의 붕괴 등으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수리된 신고인이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 및 온천개발예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하여야 한다.

**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2007.9.18.>
3.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 2-3. 온천발견신고 취소

### < 개요 >

-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그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함

### □ 취소사유

-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때
  - ※ 개발예정자의 개발의사가 없다면 확인서 징구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음
-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그 온천개발계획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 □ 처리절차

- 취소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한 때에는 공문으로 절차이행을 촉구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

### <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지역에서 금지사항 >

- 제3자의 온천수 및 지하수개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동력장치 설치허가
- 발견신고자이외의 자에 대한 온천발견신고 접수
- 온천우선이용권자 이외의 온천일시이용허가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지역의 일원에서 온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목욕장 등 온천이용시설의 신축

## ☞ 온천지침(5)

### 【온천개발면적 신정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 시장·군수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지역내에서 온천이용시(목욕장, 숙박시설 등) 신축허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온천담당부서와 협의 처리토록 함

## □ 관련법령

**법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 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법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용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3.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 법령해석 6 :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관련 (법제처 해석 16-0565)

[질의요지]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

[회 답]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 유]

- 「온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제4호)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승인의 순서대로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 이 사안은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할 때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률은 현행 「온천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 제21조제5항에서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취소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 사유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해제에 대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는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때에는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천개발계획이 취소되면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도 해제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개정 전 「온천법」 상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였던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2010년 개정 「온천법」 제 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현행 「온천법」 상 온천원보호지구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현행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현행 「온천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되었음을 고시하는 등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 < 개요 >

-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할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의 범위 3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온천발견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

#### □ 지정목적

- 소규모 온천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양질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지정범위

- 온천공을 중심으로 3만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안에서 적정면적

#### 【 (종전) 4만㎡ 미만 → (현행) 3만㎡ 미만으로 조정된 사유 】

- ▶ 지정범위를 3만㎡ 미만으로 축소 조정할 경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소규모 온천개발이 가능함
-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면적(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 : 3만㎡ 이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1의2.(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가.~나.(생략)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3.~4.(생략)

②~③ (생략)

## □ 지정기준

-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 우선이용권자의 토지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 시장·군수가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 지정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계획, 적정양수량 포함)
- 예정구역안의 토지조서·지적도 및 임야도
- 예정구역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 ※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판단은 온천발견신고수리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해당되는 경우)에 의함

##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 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음
    - ※ 시장·군수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시 서류와 동일

## □ 지정승인시 시·도지사가 고려할 사항

- 적정 양수량·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의 여부
-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 ※ 제반여건상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할 지역인지의 여부 필히 확인

## □ 고 시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관하여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온천공보호구역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 온천공보호구역이 명시된 지형도면

※ 지형도면의 작성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준용

⇒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사용하여 축척 1/500~1/1,500으로 작성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 온천공보호구역 고시내용 열람(규칙 제3조제2항)
  -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 고시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의 효과

- 온천공보호구역내 효율적인 온천자원의 보호·관리
- 온천공보호구역내 발견신고 수리된 자 이외의 목욕장 등 온천이용시설의 신축금지
  - ※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변경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축소하여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착수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6개월 범위내로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 □ 관련법령

**법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

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법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 시장·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2.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3.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시행령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① 온**

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

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도시·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규칙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는 각각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가 명시된 지형도면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 4 온천개발계획

### 4-1. 온천개발계획 수립·변경·취소

#### < 개요 >

-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음
- ▶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온천원보호지구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된 개발지구 안에 있다면 타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시장·군수 및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될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상지역 : 온천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3만<sup>m</sup><sup>2</sup> 이상인 지역

□ 수립시기 : 온천발견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개발계획의 내용

-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온천개발계획구역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계획 등
  - 온천수의 이용, 온천이용시설 규모 및 시설의 배치계획 등
-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온천의 보호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반 관리계획

#### □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온천자원평가조사

-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 온천공 및 온천개발예정지역내의 1일 적정 양수량
  - 【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때 : 최소 2개공을 통하여 확인 】
  - 【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미만인 때 : 최소 3개공을 통하여 확인 】
- 온천공의 수위변동 상황
- 온천수의 용출온도 및 성분
- 온천전문검사기관은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온천발견 신고공 외의 온천공(보조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보고서에 수록
  - ※ 발견신고공을 제외한 보조공에 대한 온천공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기존공과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양수량을 산출
- 온천개발예정지구내의 1일 적정 양수량은 모든 공에 대한 1일 적정 양수량의 합으로 함

#### □ 개발계획 승인 신청시(시장·군수) 구비서류

- 지리적 여건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 예정지구안의 토지 조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

< 전자정부법 >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축척 1/500~1/1,500) 확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 예정지구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개발계획 예정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 평가 검토보고서

□ 개발계획 승인시 고려사항(시·도지사)

- 온천공 및 온천개발예정지구내의 1일 적정 양수량
-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 온천지침(6)

### 【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승인의 신속한 이행 】

#### □ 온천개발면적에 대한 토지용도의 변경

- 온천발견신고수리된 자료부터 온천개발면적 산정을 위한 온천굴착허가 우선 조치
- 온천수량을 감안하여 온천개발면적을 확정 한 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 될 때까지 토지용도 변경 완료조치
  - ※ 온천발견신고 수리는 온천법령의 제정 취지상 온천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이후에는 반드시 온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함

#### □ 온천개발계획의 신속한 승인 신청 및 승인 조치

- 당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 ※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온천으로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발견신고를 수리한 만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 등의 대상이 됨
- 온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신청 자료의 미흡 등으로 불승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자료를 보완토록 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 온천지침(7)

### 【온천개발계획 내용이 불승인에 해당될 경우 처리방법】

- 온천개발계획 수립권자(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승인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의 계획내용의 검토결과 불승인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 중 미비되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보완요구

## ☞ 온천지침(8)

### 【2010년 이전 지정된 온천지구의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승인 방법】

#### □ 온천개발계획 승인 적용 근거

- 2010년 이전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다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규정에 대해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법제처 해석 16-0444)

부칙 <법률 제10005호, 2010.2.4.>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법률 제9202호, 2008.12.26.) 일부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 2010년 이전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 온천개발계획 승인 후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고시

- 온천법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함
- 또한, 시·도지사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함
  -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가 명시된 지형도면

#### □ 온천개발계획의 변경

- 변경승인 신청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 변경승인권자 : 시·도지사
- 변경승인 대상
  - 법 제10조제2항 각호 사항의 변경시(강행규정)
  - 온천이용시설의 증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의 감소나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상기 사항이 변경되면 그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온천개발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 범위안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승인 없이 계획변경 가능(영 제9조제5항)

### ☞ 온천지침(9)

#### 【온천개발면적 또는 시설의 증감시 적용례】

- 온천원보호지구 면적의 증감없이 온천이용시설, 온천의 채수·이용계획, 부대시설 증감 등 단순한 온천개발계획 변경필요시 “10%범위 안에서”의 적용(영 제9조제5항)은 온천개발계획 중 온천수 이용허가량 등을 감안한 전체시설면적의 10%를 기준으로 함

### □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용도의 변경

- 도시지역 :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유원지 시설 결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름)
- 자연공원구역 : 공원마을지구로 용도변경(※ 자연공원법에 따름)

### □ 온천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 계획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지구지정일로부터 2년 이상 온천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 ※ 단, 6개월의 범위내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

-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미관을 해치는 경우
-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계획 승인신청

-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승인신청서에 각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개발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조회하여서는 아니됨

## □ 온천개발계획의 범위 한계

- 온천개발계획은 온천개발예정지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내의 1일 적정양수량을 판단하여 산정된 온천채수계획, 온천이용시설 등에 관한 계획임
- 온천원보호지구내의 개발예정지 안에서만 수립이 가능하며, 온천원보호지구(개발예정지)를 벗어나서 그 계획의 범위가 미치는 것은 아님

##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설치목적 : 온천개발계획 수립,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및 등 온천개발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
- 설 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둠
- 구성·기능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관련법령

**법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시행령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량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시행령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개발

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온천이용시설의 증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3.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의 감소나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리적 여건
2.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④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변경신청)** ① 영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로 작성된 예정지구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법령해석 7 :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이후 (법제처 해석 14-0141)

**[질의요지]**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정이 의제된 후,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

**[회 답]**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의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사 유]**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함)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제10조제5항에서는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

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정이 의제된 후,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지, 아니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각기 다른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각각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정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의제규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복수의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실효는 각각 행하여져야 하므로, 의제되는 행정행위가 실효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94 해석례 참조), 「온천법」 제10조제5항에서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5항의 규정과 달리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의 취소 시 위와 같이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등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와 같은 인·허가 등의 의제 취지 및 「온천법」 제10조제5항의 법문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개발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하나의 행위로 행정행위가 종결되는 경우와 달리, 일련의 연속적 행정행위의 시작이 되는 행정행위로서 해당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연속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작이 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실효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94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온천개발계획의 결정으로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개발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은 행정작용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해석 8 : 온천개발계획 승인 부칙 적용 (법제처 해석 10-0199)

**[질의요지]**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굴착허가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 개정 「온천법」(법률 제10005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 제4조의 해석상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지?

**[회 답]**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으로서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7. 1. 시행)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굴착허가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사 유]

- 「온천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95년에 「온천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 시행 전에 지정된 온천지구는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지구로 의제되었고, 2001년에 「온천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둔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그 일부개정 「온천법」 시행 당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그 일부개정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었습니다.
- 그 이후, 「온천법」은 2006년에 전부개정되었고, 해당 전부개정 당시 해당 전부개정 「온천법」(이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바, 따라서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된 경우를 포함함)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와 관련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그리고, 2006년 「온천법」이 전부개정된 이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주된 내용의 변경 없이 일부 개정이 여러 번 있다가 2010년에 「온천법」이 개정되어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가 전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던 것을,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를 통합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결국 경과조치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하므로(법제처 2005. 9. 15. 회신, 05-0026 해석례 참조),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온천지구와 관련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승인에 있어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그 전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 규정인 “온천지구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만이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굴착허가는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법령해석 9 : 온천개발계획 승인 적용 법률 (법제처 해석 16-0444.)

[질의요지]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된 「온천법」(이하 “2010년 개정 「온천법」”이라 함)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도록 변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회 답]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 유]

- 1995년 개정 전 「온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온천개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10년 개정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0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온천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경과조치는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도적 조치로서(법제처 2016. 9. 8. 회신 16-0252 해석례 참조),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르면 시장·군수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은 시·도지사가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온천원보호지구의 신청·지정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승인이 별개의 행위였으나, 2010년 개정 「온천법」에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 등과 관련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그 취지는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원보호지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고,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하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적용하여야 할 종전의 규정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규정”이란 개정 법령의 본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을 말하므로(법제처 2010. 7. 20. 회신 10-0199 해석례 참조),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이란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될 당시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아니라, 「온천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온천법」이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제4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의 순서로 온천개발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0년 개정 「온천법」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함과 동시에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온천개발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이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제4조)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규정에 대해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4-2. 온천개발면적

###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 온천개발면적(제공미터) =  $66.2 \times 1$ 일 적정 양수량(톤)

※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온천이용객 1인당 개발기준면적은  $16.55\text{m}^2$ (5평)
- 온천이용객 1인당 온천수 사용기준량은 0.25톤(250ℓ)
- 1톤 = 4인 사용기준량  
1톤당 개발면적 =  $4\text{인} \times 16.55\text{m}^2 = 66.2\text{m}^2$

#### 계 산 례

- 온천원보호지구(개발예정지) 1일 적정 양수량 1,000톤의 경우 온천 개발면적  
 $\Rightarrow 66.2\text{m}^2 \times 1,000\text{톤} = 66,200\text{m}^2$   
※ 온천개발지역 토지가 온천개발자 소유 토지일 경우 2배인  
최고  $132,400\text{m}^2$ 까지 개발할 수 있음

## 4-3. 타법과의 관계

### □ 타법에 의한 계획에 적합한 개발계획 수립

○ 온천원보호지구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수립시 타법에 의한 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함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 지역개발계획
-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 공원계획
-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 관광지등 조성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 구역에 있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는 개발계획

#### ☞ 온천지침(10)

##### 【타법에 맞는 온천개발계획 수립】

- 법 제10조제3항중 “온천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이 타법에 의한 계획지역내에 있는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온천개발시 관련되는 타법의 계획 등을 감안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지, 타 법령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여 처리 하라는 것은 아님

#### □ 온천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 온천법 제10조의2제1항(온천개발계획 승인)과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에 있는 총 34개 법률 74개 조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개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약·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온천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와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협의간주제” 적용

## □ 온천개발 인·허가 등 의제 법령 현황

### ○ 총괄

구분	계	온천개발계획 (변경)승인	온천이용허가	비고
인·허가 등 의제	34개 법률 78개 조항	30개 법률 69개 조항	5개 법률 7개 조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중복)

### ○ 온천개발계획 (변경)승인

관계법령	의제사항	법령조문	비고
<b>30개 법률</b>	<b>69개 조항</b>		
건축법	◇ 건축허가	◇ 제11조	
	◇ 건축신고	◇ 제14조	
	◇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 제16조	
	◇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 제20조	
	◇ 건축, 대수선 협의	◇ 제29조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의 허가	◇ 제22조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제30조	
	◇ 지형도면의 승인	◇ 제32조제2항	
	◇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 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제36조제1항	
	◇ 개발진흥지구 지정	◇ 제37조제1항 제9호	
	◇ 개발행위의 허가	◇ 제56조	
	◇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제86조	
	◇ 실시계획의 인가	◇ 제8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제8조	공유수면 관리법, 공유수면 매립법 폐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제17조	
	◇ 공유수면 매립면허	◇ 제28조	
	◇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 제35조	
	◇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 제38조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사업계획 승인	◇ 제15조	
	◇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 제31조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제52조	

관계법령	의제사항	법령조문	비고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제54조	
	◇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제55조	
광업법	◇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 제24조	
	◇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 제34조	
농어촌정비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제23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 제82조제2항	
농지법	◇ 농지전용 허가	◇ 제34조제1항	
도로법	◇ 도로공사 시행허가	◇ 제36조	
	◇ 도로점용의 허가	◇ 제61조	
	◇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제107조	
사도법	◇ 사도개설의 허가	◇ 제4조	
사방사업법	◇ 벌채 등의 허가	◇ 제14조	
	◇ 사방지의 지정해제	◇ 제2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임목벌채등의 허가	◇ 제36조	
산림보호법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제9조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제11조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 제6조	
	◇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 제11조	
	◇ 산지전용허가	◇ 제14조	
	◇ 산지전용신고	◇ 제15조	
	◇ 토석채취허가	◇ 제25조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제10조	
	◇ 소하천점용의 허가	◇ 제14조	
수도법	◇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제17조	
	◇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제49조	
	◇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제5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제10조	
자연공원법	◇ 도립공원 계획의 결정	◇ 제13조	
	◇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제14조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	◇ 제20조	
	◇ 행위허가	◇ 제23조	

관계법령	의제사항	법령조문	비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분묘의 개장허가	◇ 제27조	
전기사업법	◇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제62조	
주택법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 제16조	
집단에너지사업법	◇ 집단 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제4조	
초지법	◇ 초지전용의 허가	◇ 제2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 제1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 제15조제3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 제86조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제8조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제9조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제29조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공사 등의 허가	◇ 제16조	
	◇ 점용허가	◇ 제24조	
하천법	◇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제6조	
	◇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 제30조	
	◇ 하천점용허가	◇ 제33조	

○ 온천이용허가

관계법령	의제사항	법령조문	비고
<b>5개 법률</b>	<b>7개 조항</b>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목욕장업 신고	◇ 제3조	
담배사업법	◇ 담배소매인의 지정	◇ 제16조	
식품위생법	◇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제36조 제1항 제3호	
	◇ 영업허가 또는 신고	◇ 제3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신고 체육시설업 구분	◇ 제10조 제1항 제2호	
	◇ 체육시설업의 신고	◇ 제20조	
학교보건법	◇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	◇ 제6조	



##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 온천개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온천개발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 □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권한 부여

법 제10조의4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온천개발의 경우에도 시장·군수에게 수용·사용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원활한 온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관련법령

**법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법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 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법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 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 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법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

지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법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土石)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

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66.2×일일적정양수량(톤)

비 고

1. 삭제 <2003.12.30>
2.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 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 < 개요 >

- ▶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함
  - ※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취소시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당해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온천원(溫泉源) : 채취하지 아니한 온천)
- ▶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함
  - 지정·변경·해제한 경우에는 관보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음
  - 기존의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 경계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음

###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그 계획의 변경승인 후 지체없이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을 하여야 함
- 예정지구내의 온천우선이용권자 소유토지,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감안한 온천개발면적, 온천의 부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면적을 대상으로 함
- 지구의 경계는 도로, 하천, 건축물 등 주요지형지물이나 토지의 용도, 지반 등을 감안하여 민원의 최소화 역점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 온천원보호지구의 고시사항

-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관보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 온천원보호지구가 명시된 지형도면
- ※ 지형도면의 작성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 준용 ⇒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사용하여 축척 1/500~1/1,500으로 작성
- 온천원보호지구 고시내용 열람
  - 시·도지사가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고시한 때는
  - 관할 시장·군수는 그 고시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여야 함

##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효과

- 온천원의 효율적 보호 및 관리
- 온천개발의 촉진을 위한 토지용도의 변경 및 계획적인 개발
  -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이전에 토지용도변경을 완료하여
  - 이미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계획적인 개발추진

### ☞ 온천지침(11)

#### 【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온천지구 운영】

- 온천원보호지구안에서는 온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목욕장 등 온천이용시설의 신축을 금지하고, 온천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바람

##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의견제출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이 의견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적합한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 온천개발 등 추진 조치

## □ 관련법령

**법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6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 < 개요 >

- ▶ 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1호)
- ▶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유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4조제1호)

### □ 허가의 운영취지

- 온천은 원천적으로 자연용출 상태에서 이용하여 왔음
- 국민소득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교통량의 발달 등으로 온천이용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온천 이용량도 크게 증대
- 많은 온천수를 채수하기 위해서 동력의 마력이 증가하고 온천공의 심도 역시 날로 깊어지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한 온천원의 부족 또는 고갈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온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조건하에서 동력사용을 허가
  - ※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 또는 동일성능 이하인 것으로 교체할 경우 허가생략
- 수중모타펌프 설치시 자동수위조절봉을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에 설치·봉인(신규굴착공)

## □ 동력장치 허가신청 서류

-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동력장치 설계도서
- 수문관측시설 명세
- 수수료 3만원(변경시 15,000원)

## □ 동력장치 사용허가의 제한

-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해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기존 다른공 1일 적정 양수량의 20%이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 제한
- 불허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 수문관측시설(온천공 관측시설) 설치

- 수문관측시설 설치의 필요성
  - 온천공의 수위변동 및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온천수 이용을 적절히 관리
  - 온천자원의 보다 과학적인 관리를 통하여 온천자원의 고갈방지
  - 양질의 온천수를 계속적으로 유지
- 수문관측시설 설치방법
  - 수문관측시설 : 수위측정장치(관), 유량계, 온도계
  - 동력장치 설치시 설치하되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이내에 설치
  -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소·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천공으로부터 1m 이내에 수문관측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위치에서 설치토록 하기 바람
  - 수위측정관 설치는 내경이 30mm이상인 내열·내압성관으로 하되, 기준 수위로부터 150m이상의 심도까지 설치 할 것

## □ 관련법령

- 법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①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행규칙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위측정관(안쪽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내열·내압성관을 말한다) 또는 수위측정장치
2. 유량계
3. 온도계

② 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하여 수위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Ⅲ.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

1. 온천의 이용허가
2. 온천의 보전관리



## 1 온천의 이용허가

## 1-1. 온천의 이용허가

## &lt; 개요 &gt;

- ▶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음
- ▶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포함)에서 공중의 음용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온천을 허가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제2호)
  - ※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3조제3호)
- ▶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불허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 허가의 신청서류

- 온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온천이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온천의 이용계획서



-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법 제19조, 규칙 제12조)
- 온천공 현황(양수시험결과 포함)
-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  
(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등기부 등본(목욕용 허가신청시)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 허가의 기준

- 온천의 이용허가는 산업용과 난방용보다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함
- 다만, 온천개발계획에 의하여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이용하고도 남는 경우
  -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공중시설
  - 온천원보호지구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온천이용이 가능한 산업·공중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의 제조시설
-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 □ 온천허가량

- 온천이용허가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조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 안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당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내 허가

## □ 온천허가 유효기간

- 온천이용허가는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함
    - ⇒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온천이용허가 연장 불허
    - ⇒ 정기온천자원조사보고서를 이용허가 만료 30일전에 제출

## ☞ 온천지침(12)

### 【온천이용허가와 온천자원관리】

- 온천 이용허가시 온천이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온천전문검사기관이 검사한 1일 적정 양수량의 범위내에서 허가 조치
- 온천이용허가시 반드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1일 적정 양수량 검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온천이용허가 연장시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 및 허가량을 결정
- 온천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신청 서류 중 「온천이용계획서」는 붙임1 서식을 사용
- 온천별 온천사용량에 대하여 반드시 공별 1일 결산을 하도록 지도하고 온천이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한 온천이용량을 월단위로 제출받아 과다사용 등을 확인
- ※ 온천수를 이용허가량보다 과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온천법 제33조 제3호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온천’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고발 조치
- 또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목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천법령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를 받아 채수하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의 관계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지하수개발 허가일로부터 1년마다(기간종료 30일 이내)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기 바람

※ 당해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내에서 지하수 개발허가시 위의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허가 조치

○ 온천이용허가는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이용을 허가하는 대인적 허가제도로, 이미 온천이용허가를 받고 온천을 이용하던 중 그 권리가 이전되었다면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새로이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함

< 붙임 1 >

## 온천이용계획서

### 1. 이용목적

○ 양질의 온천수를 이용하여 이용객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이용객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

### 2. 이용계획 개요

가. 이용신청자

나. 이용업소명

다. 이용기간

라. 이용허가신청량(1일)

마. 이용구분 ※ 이용은 목욕용, 음용, 산업용, 난방용으로 구분

### 3. 이용온천공 현황

가. 이용온천공 수

나. 온천공 소재지

다. 온천공 소유자(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

라. 온천공 검사기관

마. 온천공 검사기간

바. 1일 적정 양수량

### 4. 이용시설 현황

가. 이용시설현황(건축일자, 면적, 규모, 구조 등)

나. 이용시설별 온천공급계획

다. 동시수용능력(1일)

라. 온천이용 예상인원(1일) ※ 온천수사용량은 1인 250ℓ 기준

### 5. 온천이용시설 도면 및 배관도(개략도)

## □ 관련법령

- 법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공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
    - 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7조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
  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 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
    - 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시행령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④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시행규칙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1-2. 일시이용 허가

### □ 일시이용허가 요건

-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인 이용허가 가능
- 온천우선이용권자이면서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같은 명의로 준공허가를 받은 목욕장·숙박 시설 등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 ※ ‘목욕장과 숙박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과 숙박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시설

### [참고]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과 숙박시설 정의

-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외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제외시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 허가량 및 허가기간

○ 이용허가량 기준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전 : 1일 적정 양수량의 50%

○ 이용허가기간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정식 허가시까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기간 연장 가능

※ 일시이용허가 후 3년 경과시까지 온천원보호지구(구역) 지정 등 개발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연장허가 금지

## □ 관련법령

**시행령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온천이용계획서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으로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 ④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 법령해석 10 : 온천일시이용허가 유효기간 (법제처 해석 08-0022)

[질의요지]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에서는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제4항에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 구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도 「온천법」 부칙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지?

[회 답]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는 「온천법」 제16조제4항 및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받을 당시에 정한 기간이 됩니다.

### [사 유]

- 구 「온천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온천이용허가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당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 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3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온천이용허가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온천이용 우선권자(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나 그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은 토지소유권자를 말함)가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구 「온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온천이용 허가제도와 「온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온천이용 허가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온천이용허가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후부터 온천이용우선권자도 포함한 일반인에 대하여 하는 온천이용허가와 온천발견의 신고를 수리한 때부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온천이용우선권자에 대하여 하는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로 이원화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온천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구 「온천법」 제7조와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온천발견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가 그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할 경우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로써,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그 승인을 얻을 때까지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구 「온천법」에서는 4년) 이내라고 할 것인바, ①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또는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온천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②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가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도 변경 없이 계속 허용되고 있는 점, ③경과조치는 신규 법령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신규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둔다는 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의 기간에 관하여 신법이 구법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별도로 그 기간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온천법」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는 「온천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받을 당시에 정한 기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해석 11 : 온천일시이용허가 양도 (법제처 해석 08-0437)

[질의요지] 구 「온천법 시행령」(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허가(이하 “일시 온천이용허가”라 함)를 받은 자가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도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회 답]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사 유]

- 구 「온천법」(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지상권·전세권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서는 시장등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

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온천일시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과 달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시온천이용허가는 온천발견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야만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혼합적 허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혼합적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가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허가와 관련된 제반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하여도 당연히 그 허가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2001다53622 판결), 구 「온천법」 또는 「온천법」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나 허가명자의 명의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일시온천이용허가도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구 「온천법 시행령」 과 달리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발견신고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양수받은 자는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즉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온천이용허가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이 시행된 후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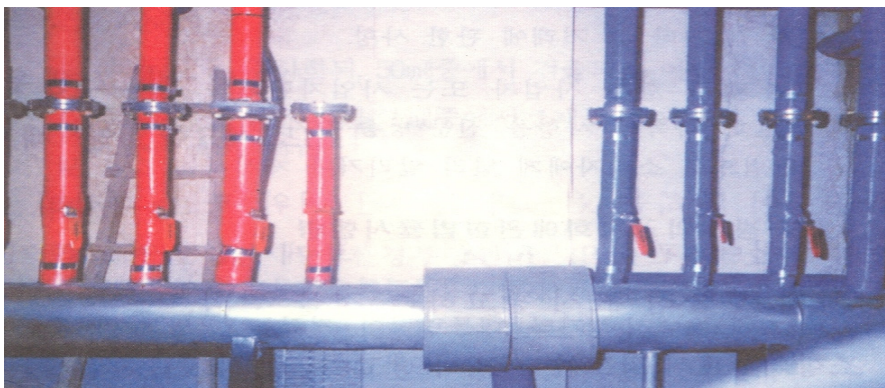
### 1-3.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 □ 온천이용허가 취소

- 온천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
  - ⇒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온천이용의 제한 명령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1년 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수질·성분 검사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 ⇒ 3개월 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차 부적합 판정이 나올 때는 이용허가 취소
- 시장·군수는 온천이용허가 취소 처분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① 온천수 공급 배관관리

- 온천이용을 받은 자는 온천수에 지하수를 섞어 사용하면 안되며, 위반시 온천이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됨
- 온천수 공급을 위한 배관 파이프라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
  - 온천이용시설 신규설치시 온천수 배관라인에는 빨강색, 지하수 배관라인에는 파랑색으로 표시(테이프 피복가능)
  - 기존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온천수 또는 지하수 공급관로를 따라 2~3미터 간격으로 5cm내외의 테이프로 표시



**㉔ 온천이용시설에서는 온천수 이용에 대한 1일 관리대장 작성·비치**

- 온천이용허가량에 의한 사용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이용시설에서는 온천공별로 온천수 사용량 등을 작성한 대장을 관리

**□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며, 규칙에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함

**☞ 온천지침(13)**

**【 허위광고의 예 】**

- 온천성분 함량을 과다 표기하는 경우(유황, 탄산 등)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에 온천표시를 사용하거나, 도로명 주소 및 간판 등에 온천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 보양온천으로 승인받지 않고 보양온천표시 사용 등
- 위 조항의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 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들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들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팸플릿·건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 관련법령**

**법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

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

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

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법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법령해석 12 : 온천업종 오인언어 사용 (법제처 해석 06-0344)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답]**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사 유]**

-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동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스파(Spa)라는 용어를 목욕장의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스파(Spa)의 어원이 유럽의 유명 온천지에서 유래하고, 스파(Spa)시설이라 함은 온천과 관련된 보양시설을 지칭한다고 일응 볼 수도 있으나, 광의로는 온천과 관련이 없는 물을 이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샤워시설 등을 총칭하여 사용되고 있는바, 스파(Spa)라는 용어가 단순히 온천이라는 의미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그 의미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온천표시만으로도 온천과 일반 목욕장의 구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온천에 관한 사실을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스파(Spa)라는 용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것이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행위가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2 온천의 보전·관리

### 2-1.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 < 개요 >

- ▶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기타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6조제2호)
- ▶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 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음

#### □ 허가의 신청서류

-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 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 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1일 적정 양수량을 포함시킬 수 있음
  - ※ 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자원조사는 지구내 모든 공을 동일 기간내에 조사
  - ※ 동일 온천원보호지구(구역)내의 온천공의 이용허가일이 다를 경우 발견 신고공의 이용허가일을 기준하여 동시 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 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온천관리대장상의 토지소유자 명시
  - 온천관리대장에 발견신고자 인적사항이외에 온천공이 발견된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온천공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 등을 확인하여 온천관리대장에 등재 조치

※ 온천관리대장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 온천지침(14)

##### 【 온천자원관리 철저 】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온천이용시설에 공급되는 온천수에 대하여 약품, 한약재 등 이물질(또는 이와 유사한 일체의 첨가물)을 첨가할 경우에 그 내용을 반드시 게시한 후 사용
- 시장·군수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청결한 온천수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이물질 첨가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여 온천성분의 임의조작 및 온천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 □ 관련법령

**법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규칙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 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2-2.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 < 개요 >

- ▶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함
-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 및 그 밖에 온천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도입배경

- 국가자원인 온천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인력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관측장비에 의한 실시간 확인 등 자동화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온천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 □ 구축내용

- 온천공에 대한 온천수위, 수온 모니터링
-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들에 대한 사용량 수집
- 온천수 사용량과 수위관계 해석을 통한 온천수위 모델링
- 온천전문 검사기관의 온천보고서 수집
- 전국 온천정보 수집
  - 온천수 허가량, 사용량, 수질, 성분, 온천수 열에너지 이용 현황
  - 온천장 시설현황, 의료적 효능, 전국 온천지구에 대한 지열류량 해석 등
- 온천정보 수집 및 분석 통한 온천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

### □ 설치기준

- 전국 온천지구(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별 1개소당 1~2개공씩 관측시스템 설치

## □ 수행기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6조(행정자치부소관)에 의거 (특)한국온천협회가 행자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

## □ 관련법령

**법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2-3.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 < 개요 >

- ▶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성분·용출량 및 이용상황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 출입검사의 취지

- 온천자원의 보호와 온천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온천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천이용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보고서만으로 불충분하거나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이용시설에 직접 들어가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 출입조사의 시기

- 출입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기적인 출입검사 뿐만 아니라 일시적 비정기적 검사를 포함하는 것이며
- 비정기적 출입조사는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함

## □ 출입조사 방법

- 출입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검사 실시 전에 미리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온천종사자 또는 시설관리자에게 출입검사의 일자, 검사 사유, 검사내용, 검사자 등을 통보

###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출입조사시에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시킨 후 조사 실시

## □ 출입조사 공무원

- 법규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온천담당공무원 또는 출입조사에 필요한 공무원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의미함
- 출입조사 공무원은 아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분확인 후 조사

## 【온천출입검사원증】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8.11>

(앞 쪽)

제 호  <b style="font-size: 1.2em;">온천출입검사원증</b> (유효기간: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div> <b style="font-size: 1.2em;">성 명</b>  <b style="font-size: 1.2em;">기 관 명</b>
--

55mm×85mm[보존용지(1종)120g/㎡]

(색상 : 하늘색)

(뒤 쪽)

<b style="font-size: 1.1em;">온천출입검사원증</b>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온천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b style="font-size: 1.1em;">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직인</span>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성분·유출량 및 이용 상황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원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온천지침(15)

#### 온천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온천이용시설
- 점검기준
  - 시·도 : 반기 1회이상
    - 상반기 : 2. 1 ~ 2월말(결과보고 3. 15까지)
    - 하반기 : 10. 1 ~ 10월말(결과보고 11. 15까지)
  - 시·군·구 : 분기 1회이상 (※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점검결과를 실시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점검방법
  - 시설점검 : 건축업무담당 부서와 합동
  - 위생점검 : 보건·위생부서와 합동
- 점검내용
  - 온천의 온도
  -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 온천이용 허가량 초과 사용여부
  -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 온천이용 허위·과장광고 여부
  -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 **결과조치** : 필요한 사항의 적정 조치(법 위반시 고발조치, 행정조치 등)

## □ 관련법령

**법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행규칙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2-4.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 개요 >

- ▶ 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마다 시장·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특이성분(유황, 유리탄산)에 대한 성분검사를 받아야 함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제34조제3호)

- ▶ 시장·군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검사 결과 온천으로서의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



## □ 검사의 취지

- 온천수질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온천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 온천검사 절차 및 검사결과 게시

- 시장·군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
- 검사실시를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음

## □ 검사기관·검사주기·검사항목

구 분	검 사 기 관	검 사 주 기	검 사 항 목
수질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연 1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 여부를 포함한다)
성분검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5년마다 1회 다만, 유황성분(total S-2 성분함량),유리탄산(free CO2) 성분의 경우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유효기간 경과조치 : 성분검사기간과 정기자원조사기간이 동일년도인 경우  
정기자원조사시 성분검사를 동시에 수행

(예) 성분검사는 2010.1.5., 정기자원조사는 2010.8.5.인 경우 성분검사를  
2010.8.5.에 같이 실시할 수 있음(자동연장으로 행정처리)

## □ 관련법령

**법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규칙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 주기는 별표 4와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30일 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온천에 포함된 성분의 치료효과 등 온천의 이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2-5.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 < 개요 >

- ▶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의 방법 등 그 밖에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함
  - 시장·군수가 온천을 공중의 목욕용으로 허가하는 경우 그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법제17조 및 시행규칙제11조 [별표3]을 적용

### □ 온천목욕장 수질기준 (규칙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목욕장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육조수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온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수질기준 적용을 받음
  - 원 수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육조수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1ml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함

### □ 수질검사 방법

- 원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육조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총대장균군 시험방법 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의함
- 육조수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에 채수방법은 육조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육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육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
  - 육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육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결한 선

- 총대장균군 시험용 시료 채취 및 이동 방법
  - 멸균된 100ml이상의 용기를 이용하여 무균상태로 채취
  - 한번 채취된 시료는 저온(10°C이하)의 상태로 6시간 이내에 검사실로 운반
  - 검사기관은 시료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을 시작

## □ 관련법령

**법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의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서는 별표 3을 적용한다.

## 2-6. 온천의 공동급수

### < 개요 >

- ▶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음
- ▶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공동급수의 취지

- 동일 온천원보호지구내에 다수의 온천공 굴착 및 온천수의 과다 취수로 인한 온천원의 고갈 등을 예방하고
- 증대되는 온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온천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취수·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임

## ☞ 온천지침(16)

### 【온천관련 허가시 금지사항】

- 온천굴착허가, 동력장치 설치허가, 온천이용허가 등 온천관련 허가시 개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채납 행위 금지

## □ 공동급수의 시행방법

- 시장·군수는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할 수 있음

## ☞ 온천지침(17)

### 【지방자치단체 공동급수 운영방안】

- 공동급수 자격요건,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

## □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운영

-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 관련법령

**법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령해석 13 : 온천 공동급수 적용 여부 (법제처 해석 08-0199)

[질의요지]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 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 있는지?

[회 답] 「온천법」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온천 이용허가 대상에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 시설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사 유]

- 「온천법」 제2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고, 공동급수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급수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하나의 온천공의 온천수를 “배분”하는 개념으로서 「온천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온천수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은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될 것이고, 따라서 공동급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온천이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은 “공중의 목욕용·음용, 산업용, 난방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질의 대상 업종인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또는 골프장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을 조례에서 공동급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공중의 목욕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온천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온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이행하고 온천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온천을 이용하도록 하는 시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천법」 제16조에서는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을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과 산업용, 난방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는 온천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온천원보호지구 안의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산업용, 난방용을 위한 허가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온천법」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는 한정된 자원인 온천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배분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규정들은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온천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이용에 있어서도 제한된 수량을 일반공중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용하게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그 이용대상을 공중의 목욕시설 및 숙박시설에 한정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온천법」 제16조의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으로서의 “공중의 목욕용” 제공의 개념은 일반 공중이 누구나 제한 없이 목욕을 주된 용도로 이용하도록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단순히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범위를 넘어 공중 그 중에서도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인바,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은 해당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이용하는 자만이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목욕을 주된 용도로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 내의 목욕시설은 「온천법」 제16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 용도로서의 “공중의 목욕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례로 이러한 시설 내의 목욕시설을 공동급수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에 위반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조례로 온천의 공동급수 대상 업종(해당 시설 내의 부대시설인 목욕시설에 온천을 공동급수하는 대상 업종)으로서 요양원, 연수원, 수영장, 골프장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2-6. 기타사항

### □ 대도시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

- 온천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시·도지사로 봄

[참고8]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황('16.12.현재, 특별시·광역시 제외)

- 경기도(9개)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 충청북도(1개) : 청주
- 충청남도(1개) : 천안
- 전라북도(1개) : 전주
- 경상북도(1개) : 포항
- 경상남도(2개) : 창원, 김해

### □ 시정요구 (법 제29조)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이 법에 의한 승인·신고수리·허가를 함에 있어 이 법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 청문 (법 제30조)

-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의 취소
  -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 IV. 수수료 및 벌칙 등

---

1. 수수료
2. 벌칙
3. 과태료



## 1 수수료

## ○ 민원별 현황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비고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30일	없음	
온천발견신고	10일	없음	
토지굴착등(변경) 허가	5일	신규굴착 : 공당 6만원 증 굴 : 공당 3만원	시행령 제22조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	5일	설치 : 개소당 3만원 변경 : 개소당 1만5천원	시행령 제22조
온천이용허가	5일	건당 10만원	시행령 제22조
수질·성분 검사	5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지하수개발 허가	5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수수료 납부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 ○ 관련법령 : 법제31조(수수료), 시행령제22조(수수료)

**법제31조(수수료)** 제12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2 벌칙

### ○ 위반사항별 현황

위 반 사 항	벌 칙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없이 토지를 굴착한 자</li> <li>- 온천굴착신고를 아니한 자</li> <li>-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li> <li>- 보양온천 지정을 받지 않고 보양온천 표시를 사용한 자</li> <li>-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 온천관련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온천표시를 사용한 자</li> <li>-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li> </ul>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없이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li> <li>-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에서 허가없이 지하수를 개발한 자</li> <li>-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li> </ul>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li> <li>-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li> <li>- 정기적인 수질검사·성분검사 의무를 위반한 자</li> </ul>	300만원이하의 벌금	제34조

위 반 사 항	벌 칙	비 고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토지굴착으로 온천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0만원이하의 벌금	제35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	제36조

○ 관련법령 : 법제32조 ~ 제25조(벌칙), 법제36조(양벌규정)

**법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법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제16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법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법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과태료

○ 부과대상

부과대상	벌칙	비고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굴착한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
온천이용업소에서 검사결과 및 주의사항 등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때		
시장·군수가 요구한 온천시설 관리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 부과·징수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

[참고9]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내(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1257('15.4.9.))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내(온천법 제37조 관련)**

1. 온천법 제37조(과태료) 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과 타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산정사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온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내하고자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와 음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7조제1항 제1의2호	
가. 수질검사 결과 미게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나. 성분검사 결과 미게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다. 음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거짓보고한 경우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제37조제1항 제2호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제37조제1항 제3호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관련법령 : 법제37조(과태료)

**법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V. 참 고 사 항

---

1. 온천전문검사지침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3.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4. 온천법령집



## 1. 온천전문검사지침



# | 목 차 |

<b>I. 온천전문검사의 목적</b> .....	<b>163</b>
<b>II. 온천전문검사의 종류</b> .....	<b>164</b>
1. 온천부존조사 .....	164
2. 온천공검사 .....	164
3. 온천공영향조사 .....	166
4. 온천자원평가조사 .....	168
5. 정기온천자원조사 .....	169
6. 성분검사 .....	170
<b>III. 검사항목 및 내용</b> .....	<b>171</b>
1. 온천부존조사 .....	171
1-1. 지형 및 수계조사 .....	171
1-2. 지질 및 지질구조조사 .....	171
1-3. 인근지역 온천현황 조사 .....	171
1-4. 시추공에 대한 굴착계획 .....	171
2. 온천공검사 .....	172
2-1. 지하수위 관측 .....	172
2-2. 물리검층 .....	173
2-3. 수중모터펌프 설치시 입회 .....	173
2-4. 단계양수시험 및 회복시험 .....	173
2-5. 1일 적정 양수량 산정 .....	174
2-6. 장기 양수시험 .....	175
2-7. 성분검사 .....	175

<b>3. 온천공영향조사</b> .....	<b>176</b>
3-1. 영향의 정도 .....	176
3-2. 온천공검사 실시 .....	177
3-3. 영향비율 계산 및 적정양수량 산정 .....	177
3-4.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에서의 신규 온천굴착공 수위강하 ...	178
<b>4. 온천자원평가조사</b> .....	<b>178</b>
4-1. 온천공검사 실시 .....	178
4-2. 온천공영향조사 실시 .....	178
4-3. 1일 적정 양수량 및 온천개발면적 산정 .....	178
<b>5. 정기온천자원조사</b> .....	<b>179</b>
5-1. 온천공 현황파악 .....	179
5-2. 수량관측 .....	179
5-3. 온천수위 관측 .....	179
5-4. 양수시험 .....	179
5-5. 성분분석 .....	179
5-6. 적정 양수량 산정 .....	179
<b>6. 성분검사</b> .....	<b>181</b>
6-1. 수소이온농도에 의한 분류 .....	181
6-2. 주요 이온성분에 의한 형의 구분 .....	181
6-3. 광천온천의 분류(염화물광천, 황산염광천, 탄산염광천) .....	182
6-4. 미량성분에 의한 분류 .....	182
<input type="checkbox"/> <b>온천공검사 및 신고수리 추진체계</b> .....	<b>183</b>
<input type="checkbox"/> <b>온천전문검사별 검사비</b> .....	<b>184</b>

<b>IV. 온천전문검사 운영절차</b> .....	<b>186</b>
<b>1. 목적 및 관련법령</b> .....	<b>186</b>
1-1. 목적 .....	186
1-2. 관련법령(온천법) .....	186
<b>2. 온천전문검사의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b> .....	<b>187</b>
2-1. 위탁의 대상 .....	187
2-2. 위탁운영 체계 .....	187
2-3. 위탁계약 체결 .....	187
2-4. 운영사항의 관리·감독 .....	187
<b>3. 온천전문검사 협의회 구성·운영</b> .....	<b>188</b>
3-1. 목적 .....	188
3-2. 임원구성 .....	188
3-3. 회의소집 .....	188
3-4. 회의록 작성·보관 .....	188
3-5. 의결의 효력 .....	188
<b>4. 위탁운영 행정지원</b> .....	<b>189</b>
4-1. 학술위원회 설치·운영 .....	189
4-2. 자료의 보존 .....	189
4-3. 회계 처리 .....	189
<b>5. 온천전문검사 추진체계</b> .....	<b>190</b>
5-1. 온천부존조사 .....	190
5-2. 온천공검사 .....	191
5-3. 온천공 영향조사 .....	192
5-4. 온천자원 평가조사 .....	193
5-5. 정기온천자원조사 .....	194
5-6.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	195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b>참고1.</b>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b>196</b>
<input type="checkbox"/> <b>참고2.</b>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b>197</b>





# I. 온천전문검사의 목적

- 온천은 온천법에 의해 굴착되어 그 타당성을 온천전문검사로써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온천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온천법 제2조에 의한 온천의 정의는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하로부터 용출된다는 의미는 자연용출은 물론 시추공의 굴착을 통하여 인위적인 양수를 포함한다.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온천법에 의해 굴착허가를 받아야 하며,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발견신고공 및 보조공에 대하여 온천공검사를 실시하는데 용출온도, 적정 양수량, 수위강하 및 성분분석 등을 평가한다.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을 이용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5년이며, 매 5년마다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시행되는 온천자원조사는 적정 양수량, 수위 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 등을 재평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온천공들간의 온천수 영향관계를 조사하여 적정 양수량을 조정하거나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 이 지침은 온천법에 의해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온천조사에 대한 수행방법 및 기술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그 운영 및 해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조사의 표준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Ⅱ. 온천전문 검사의 종류

### 1 온천부존조사

- 조사목적 :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시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
- 관련법령 : 온천법 제12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意的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온천공검사

- 조사목적 : 신규 온천발견 신고공 및 온천굴착공(보조공)에 대해 온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 최초 온천발견신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온천공검사인 경우,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온천협회 관계자 입회하여 검사하여야 함
    - ※ 최초 온천공검사를 시행하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은 검사실시일자, 검사인력, 검사일정(시간단위)을 검사일 15일전까지 온천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온천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sub>3</sub>-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sub>2</sub>Cl<sub>4</sub>)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sub>2</sub>HCl<sub>3</sub>)은 0.03mg/L 이하일 것

시행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3 온천공영향조사

- 조사목적 : 기존 온천공 주위에 신규로 굴착된 개발공에 대한 조사로서 개발공과 인접된 온천공, 지하수공간의 수위 영향정도 판단 및 수위 영향관계를 고려한 온천공(보조공)의 1일 적정양수량 조정을 위한 조사
- 관련법령 : 온천법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행령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 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 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 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 4 온천자원평가조사

○ 조사목적 : 온천발견 신고공을 포함하여 1~2개 이상의 보조공에 대한 온천공검사 및 온천공영향조사를 통한 1일 적정 양수량, 온천수 영향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 관련법령 : 온천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정기온천자원조사

○ 조사목적 : 온천지구(구역) 지정 5년이 경과된 후 최초 온천이용허가를 득할 때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 자원조사로서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 관련법령 : 온천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온천법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②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온천이용허가 만료일 30일 이전



## 6 성분검사

- 검사목적 : 온천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온천수의 수질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
- 관련법령 : 온천법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제12조제1항관련)

구분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
수질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연 1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체에의 유해여부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 여부를 포함한다)
성분검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5년마다 1회. 다만, 유황성분(total S-2 성분함량), 유리탄산(free CO <sub>2</sub> ) 성분의 경우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Ⅲ. 검사 항목 및 내용

### 1 온천부존 조사

#### < 조사개요 >

- ▶ 토지를 굴착하기 전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로서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 경우에는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부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함께 첨부

#### 1-1. 지형 및 수계조사

- 온천공을 굴착할 지역에 대한 지형, 수계(하천의 경계), 굴착공 위치, 및 수계 범위에 대한 조사

#### 1-2. 지질 및 지질구조조사

- 조사지역에 대한 암석분포, 생성연대 및 지질구조에 대한 조사

#### 1-3. 인근지역 온천현황 조사

- 굴착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의 온천공(반경 10km 이내) 및 지하수공(반경 300m 이내) 현황, 굴착심도, 적정양수량 등 조사

#### 1-4. 시추공에 대한 굴착계획

- 굴착할 시추공에 대한 굴착심도, 공경, 케이싱 설치심도에 대한 주상도 (단면도)

## 2 온천공 검사

### < 검사개요 >

- ▶ 신규 온천발견 신고공 및 온천굴착공(보조공)에 대해 온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수위강하 및 성분 등을 평가. 검사항목으로는 조사공 내의 지하수위 관측, 온도 및 물리검층, 양수 시험 및 성분분석 등이다. 온천공검사의 검사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한다.

### 2-1. 지하수위 관측

- 지하수위의 변화는 크게 장기적인 요인과 단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적인 변화요인으로서는 기후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 장기적인 양수 및 달의 공전에 의한 대수층의 압력변화 등이 있다. 단기적인 변화요인으로서는 단기적인 채수, 1일 달의 인력(引力)변화, 지진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에 따라 지하수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양수시험 전에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인 수위관측 통하여 기준 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지하수위 관측은 15일 이상 조사공의 수위를 관측하여 1일 수위 상승(하강)율이 평균 0.5m 이내로 3일 이상 유지한 상태 하에서 단계양수 시험 직전의 수위를 기준수위로 한다. 1일 수위 상승(하강)율이 계속 0.5m이상일 경우에는 30일까지 관측할 수 있으며, 가장 안정된 수위를 기준수위로 본다. 만약 주위의 온천공 또는 지하수공의 양수에 의해서 조사공의 수위 상승, 하강이 1회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고 그 폭이 1m 이상인 경우는 기존공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온천공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준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을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100m 수위강하는 해수면으로부터 100m까지로 한다. 자연 용출인 경우는 용출되는 지점인 케이싱 상단부를 기준수위로 하며, 15일 이상 자연 용출시켜 용출율이 안정된 후 양수시험을 시작한다.

## 2-2. 물리검층

- 시추공 내의 지질상황 판단은 시추할 때에 회수되는 암석의 코아를 감정함으로써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코아가 없을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를 감정하게 되는데 이들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리검층이다. 이 물리검층의 방법에는 온도검층, 자연감마선검층, 전기전도도검층, 전기검층 등이 있으며, 시추공 내의 지온경사, 굴착 심도 확인, 대수층 구간 파악, 케이싱 설치구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온천공 검사시 물리검층은 온도검층을 포함한 2가지 이상의 물리검층을 실시한다.

## 2-3. 수중모터펌프 설치시 입회

- 수중모터펌프 설치시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입회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장비설치의 확인 및 그 이외의 목적으로 부착되는 장비가 없도록 확인한다. 설치장비는 한 개의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며, 용량은 수위강하 100m 내외를 강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수위측정관은 기준수위로 부터 150m 이상 설치하며, 내경은 3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토출관 상단부에는 압력계(10kgf/cm<sup>2</sup> 이상), 수량조절 밸브 및 유량계(오리피스 등)를 부착하며, 수량조절에 따른 과다압력 방지를 위해 보조 토출관(내경 2인치 이상)을 설치한다.

## 2-4. 단계양수시험 및 회복시험

- 조사공의 비수위강하 등을 산출하며, 이에 따른 적정양수량 산정 등을 위해 이 시험을 실시한다.
- 적은 양수율에서 많은 양수율로 양수율을 변화시키면서 4단계 이상 실시한다.
- 최대 양수율은 수위강하가 100m 내외가 되는 양수율로 하며 수중펌프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중펌프의 최대용량 이내에서 결정한다.

- 첫 단계의 양수시간은 1,000분 이상으로 하며 두 번째 단계부터는 240분 이상으로 한다. 각 단계가 수위회복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양수시험이므로 로그가중평균법 등을 이용하여 양수시간을 보정하여 해석한다.
- 또한, 단계양수시험은 각 단계별 양수율이 일정율이 아닌 자연감소율로 시험할 수 있다.
- 단계양수시험 후 회복수위를 계속 관측하여 수위강하량의 95% 이상 수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 2-5. 1일 적정 양수량 산정

- 단계양수시험을 통하여 48시간 후의 단계별 예측수위를 구하고, 양수율과 예측수위 관계를 이용하여 수위강하식을 산출한다.

$$s_w = BQ + CQ^n$$

B: 대수층손실상수  
 Q: 양수율(m<sup>3</sup>/day)  
 C: 우물손실상수  
 n: 우물손실지수

- 조사공의 수위강하( $s_w$ )가 100m일 때의 양수율( $Q_{100}$ )을 구한다.
- 단계양수시험 후 수위회복 그래프에서  $t'_{95}$ (총수위강하량에서 95%까지 회복될 때의 시간)를 구한다.
- 1일 적정 양수량( $Q_s$ )은 아래 식으로 산정한다.

$$Q_s = 150 + (Q_{100} - 150) \times \frac{t_{sc}}{t_{sc} + t'_{95}} \quad (\text{단, } Q_{100} \geq 150)$$

150 : 온천공의 최소 적정양수량(m<sup>3</sup>/day)

$t_{sc}$  : 마지막 단계양수율 최종보정시간

- 단, 1일 적정 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시의 최대양수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Q_{100}$ 이  $150 \text{ m}^3/\text{day}$  미만인 경우 적정양수량은  $Q_{100}$ 으로 한다.

## 2-6. 장기 양수시험

- 단계양수시험에서 산정된 적정양수량 범위 내에서 48시간 양수하며, 수위강하, 양수온도 등을 확인하여 적정양수량으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 용출온도 : 1일 적정 양수량으로 양수할 때 24시간 이후의 양수온도 중 최저온도를 의미하며  $^{\circ}\text{C}$ 로 표기한다. 온천법에서 정한 “ $25^{\circ}\text{C}$  이상의 온수”는 이 용출온도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 2-7. 성분검사

- 온천수에 함유된 성분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질 유형을 분류
- 양수시험시 현장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분석을 실시한다.
- 검사기관 및 검사항목
  - 온천전문검사기관 : 수질 유형을 분류하는 이온성분 분석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 3 온천공영향조사

#### < 조사개요 >

- ▶ 온천공영향조사는 신규로 굴착된 온천공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의 기존 온천공 및 지하수공에 대한 조사로서 단계양수시험 및 장기양수시험기간 동안 신규온천공과 인접된 기존의 온천공, 지하수공간의 수위 영향정도 판단 및 수위 영향관계를 고려한 보조공의 1일 적정양수량을 조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온천공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3-1. 영향의 정도

- 양수시험시 수위강하는 양수정에서 급격하게 발생되며 양수정으로 부터 멀어질수록 수위강하는 적게 나타난다. 그림 3-1은 양수정에서 양수시험시 일정시간 경과후 나타날 수 있는 수위강하의 단면도이며, 그림 3-2는 이를 3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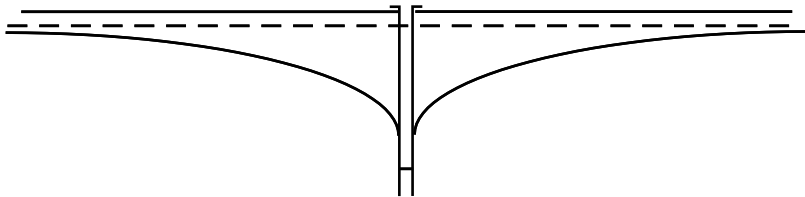


그림 3-1. 양수시 일정시간 경과 후의 수위강하의 단면도

- 조사공에서 양수를 실시하고 어느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그림 3-1과 같이 수위강하가 발생되는데 이 주위에 기존 온천공이 있는 경우 기존 온천공에서도 수위강하가 발생된다. 기존 온천공이 조사공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수위강하가 많이 발생되며, 먼 곳에 있는 경우는 수위강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된다. 따라서 이를 두 공간의 영향의 정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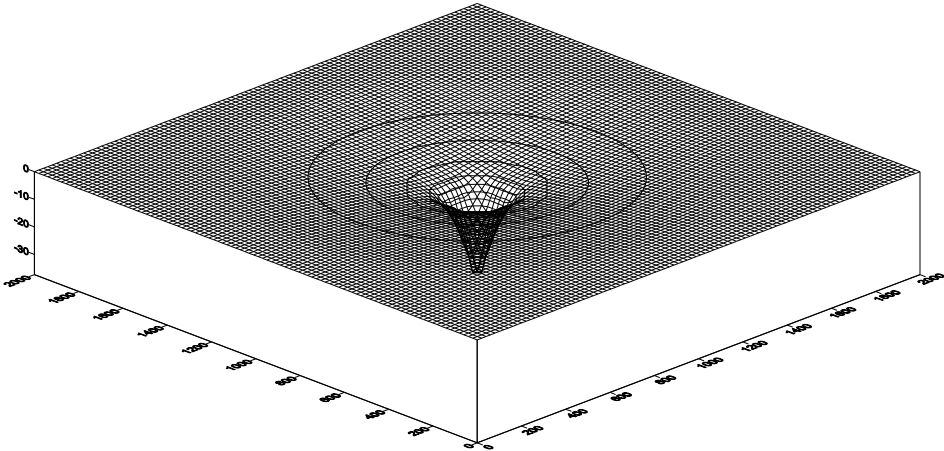


그림 3-2. 양수시험시 수위강하의 3차원 모형

### 3-2. 온천공검사 실시

- 검사공의 적정양수량을 산출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온천공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공의 주변 공들과 “영향을 제거하지 않은 1일 적정 양수량( $Q_{s+e}$ )”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Q_{s+e} = 150 + (Q_{100} - 150) \times \frac{t_{sc}}{t_{sc} + t'_{95}} \quad (\text{단, } Q_{100} \geq 150)$$

150 : 온천공의 최소 적정양수량( $\text{m}^3/\text{day}$ )

-  $Q_{100}$ 이  $150 \text{ m}^3/\text{day}$  미만인 경우  $Q_{s+e}$ 는  $Q_{100}$ 으로 한다.

- 단,  $Q_{s+e}$ 는 단계양수시험시의 최대양수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3-3. 영향비율 계산 및 적정양수량 산정

- 조사공의  $Q_{s+e}$ 로 2일간 장기양수시 주위의 기존 공들에서 영향수위를 관측하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공의 수위강하를 “최대영향수위 ( $s_{\max}$ )”라 한다.
- 조사공이 기존공에 미치는 “최대영향비율( $e_{\max}$ )”은 아래식으로 표현한다.

$$e_{\max} = s_{\max}/s_w \times 100(\%)$$

-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미치는 영향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 $e_{\max} \geq 2\%$ ” 일 때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다.



- 주변공과의 영향을 제거한 조사공의 “1일 적정 양수량( $Q_s$ )”은 아래식으로 한다.

$$Q_s = Q_{s+e}(1 - e_{\max})$$

### 3-4.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내에서의 신규 온천굴착공 수위강하

- 기존 온천공들을 계속 사용하여 온천지구 전체의 수위가 해수면 아래에 있는 경우 신규 온천굴착공의 기준수위는 해수면으로 한다.

## 4 온천자원평가조사

### < 조사개요 >

- ▶ 한 지역 내에 2개 혹은 3개 이상의 온천공을 굴착시 각 공의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온천원보호지구 등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온천자원평가조사의 조사기간은 10개월 이상으로 한다.
- ※ 갈수기, 풍수기 포함의미

### 4-1. 온천공검사 실시

- 한 지역에 최초로 발견된 온천발견신고공 및 온천굴착공(보조공)에 대한 “온천공검사”를 실시한다.

### 4-2. 온천공영향조사 실시

- 온천발견신고공을 제외한 온천굴착공에 대해 “온천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공의 영향을 제거한 적정양수량을 산출한다.

### 4-3. 1일 적정 양수량 및 온천개발면적 산정

- 한 지구 내의 총적정양수량( $Q_{st}$ )은 각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Q_s$ )의 합으로 한다.
- 온천개발면적( $A$ ) 산정은 아래식으로 한다.

$$A(m^2) = 66.2 \times Q_{st}$$

## 5 정기온천자원조사

### < 조사개요 >

- ▶ 온천지구(구역) 지정 5년이 경과된 후 최초 온천이용허가를 득할 때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자원조사로서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최초 온천이용허가일로 기준하여 동일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모든 온천공을 함께 조사한다. 온천원보호지구의 조사기간은 10개월 이상으로 하며, 온천공보호구역의 조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5-1. 온천공 현황파악

- 온천원보호지구 등에 있는 온천공들의 위치, 소유자, 심도, 공경, 기적정 양수량 등을 파악한다.

### 5-2. 수량관측

-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하여 수량을 관측한다.

### 5-3. 온천수위 관측

-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위변화를 관측한다.

### 5-4. 양수시험

- 온천공들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양수시험이 가능한 경우에 양수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량관측 및 온천수위 관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 5-5. 성분분석

- 온천수에 대한 수온, 현장분석 및 실내분석을 실시한다.

### 5-6. 적정 양수량 산정

- 사용량과 수위강하 : 사용량에 따른 수위변화 관계를 파악하여 온천수 사용시의 수위강하, 중단시의 회복수위를 해석한다.

- 1일 최고수위와 1일 평균수위 : 사용량 관측시점을 기준으로 1일 최고수위와 1일 평균수위를 해석하며, 이들 간의 차이를 “1일 평균수위강하량”이라 한다.
- 1일 사용량( $Q$ )과 1일 평균수위강하량( $\overline{s_w}$ ) 관계 해석 :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하여 각각의 1일 사용량과 1일 평균수위강하량 관계를 해석하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overline{s_w} = AQ + DQ^n$$

$A$  : 수위강하상수

$D$  : 비평형상수

$n$  : 비평형지수

- 기준수위( $s_0$ )설정 : 정기 온천자원 조사시 기준수위는 관측기간 동안의 1일 최고수위의 평균값(지표로부터의 깊이)으로 한다.
- 기준수위로부터 100m 수위 강하시의 최대양수량( $Q_{100}$ ) 산출
  - 상기 수위강하식( $\overline{s_w}$ ), 1일 사용량 및 평균수위 등을 이용하여 기준수위로부터 100m 수위강하시의 최대양수량을 산출한다.
  - 기준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을 경우 100m 수위강하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양수량을 산출한다.
  - 수위강하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간편식을 이용하여 최대양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Q_{100} = Q_{avg} \times 100m / (s_{avg} - s_0)$$

$Q_{avg}$  : 평균양수량( $m^3/d$ )

$s_{avg}$  : 지표로부터 평균수위(m)

$s_0$  : 기준수위(m), 기준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은 경우 지표로부터 해수면까지의 깊이를 적용

- 수량초과율 산정 : 최대양수량과 기존 적정양수량(허가량)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수량초과율을 산정한다. 수량초과율이 100% 이하이면 기존 적정양수량이 타당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100% 이상이면 기존 적정양수량을 감하여야 한다.

$$\text{수량초과율(\%)} = \text{기존 적정양수량} / \text{최대양수량} \times 100(\%)$$

- 수량초과율이 100% 이상인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는 온천수 보전을 위하여 온천수 적정양수량(허가량)을 감해야 하며, 기존 적정양수량(허가량)을 감하는 정도는 “평균 수위초과율(\%)×0.1”로 한다.

## 6 성분검사

### < 검사개요 >

- ▶ 온천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온천수의 수질 특성을 규명한다.

### 6-1. 수소이온농도에 의한 분류

	~	3.0	미만	산성
3.0	~	6.0	미만	약산성
6.0	~	7.5	미만	중성
7.5	~	8.5	미만	약알칼리성
8.5	~			알칼리성

### 6-2. 주요 이온성분에 의한 형의 구분

- 주요 이온성분(양이온성분 Na, Ca, Mg, K; 음이온성분 Cl, SO<sub>4</sub>, HCO<sub>3</sub>, CO<sub>3</sub>)을 meq/ℓ로 환산한 후, 양이온과 음이온성분 각각을 100%로 비교하여 25%이상인 성분으로 형을 표시한다. 이 때 25% 이상인 성분이 두 개 이상일 때 가장 높은 값의 성분을 앞에 놓고 두 번째 성분은 괄호로 묶는다.     예) Na(Ca)-HCO<sub>3</sub>(SO<sub>4</sub>)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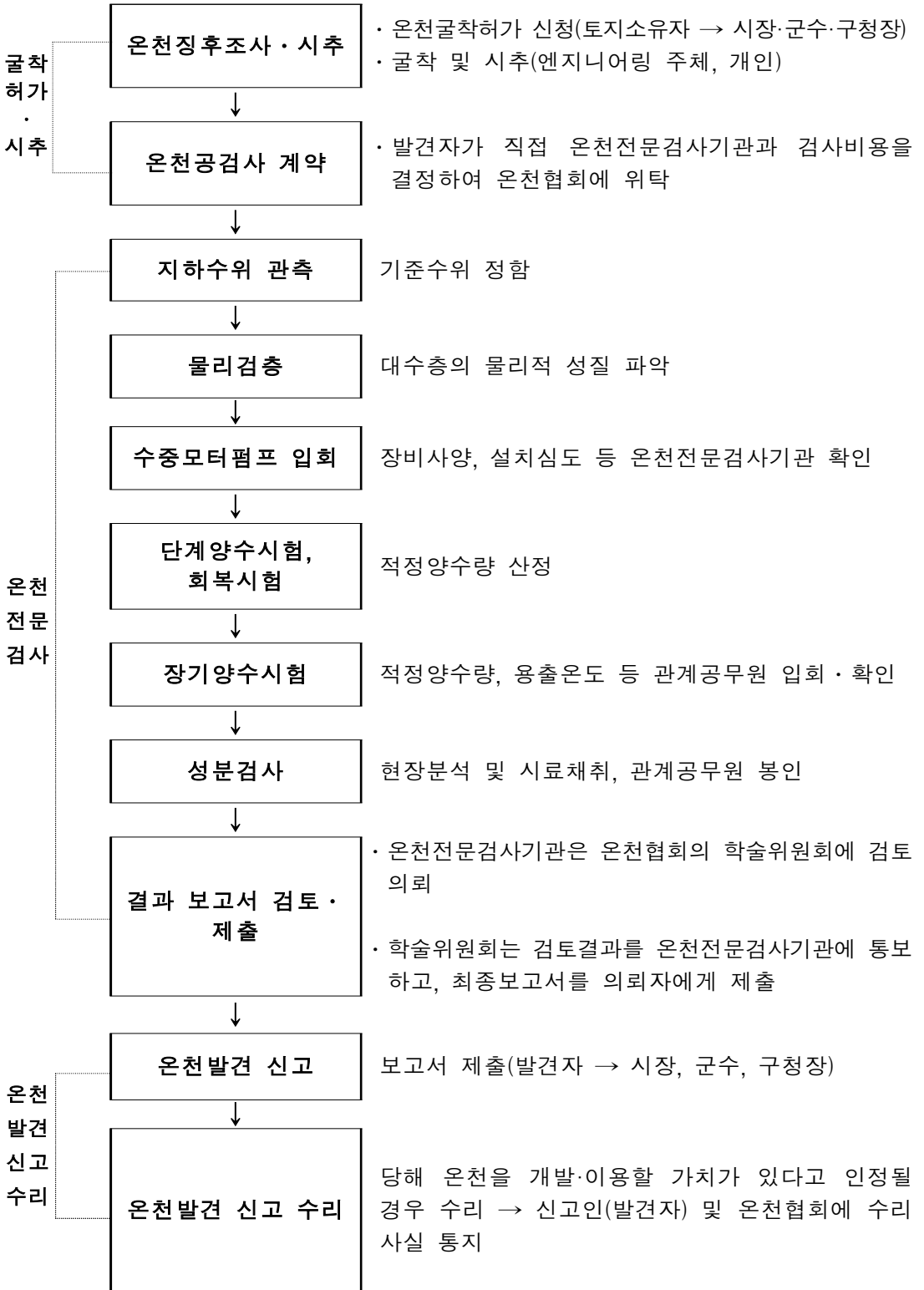
### 6-3. 광천온천의 분류(염화물광천온천, 황산염광천온천, 탄산염광천온천)

- 염화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l 형인 경우를 염화물광천온천이라 한다.
- 황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SO<sub>4</sub> 형인 경우를 황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탄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O<sub>3</sub> 형인 경우를 탄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6-4. 미량성분에 의한 분류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명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성분의 기원이 오염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케이싱의 영향 동일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황온천** : 총고용물량에 관계없이 total S<sup>-2</sup> 성분함량이 0.1mg/ℓ 이상인 온천을 유황온천이라 한다(이때, SO<sub>4</sub><sup>+2</sup>성분은 황산이온성분으로 따로 표시한다). total S<sup>-2</sup> 성분함량은 S<sup>-2</sup>, HS<sup>-</sup>, H<sub>2</sub>S로 이루어지며, 대수층의 상태가 환원상태임을 의미한다.
  - **탄산온천** : 탄산가스(CO<sub>2</sub>) 성분을 250mg/ℓ 이상 함유한 경우를 탄산온천이라 한다.
  - **실리카온천** : 실리카(SiO<sub>2</sub>)성분의 함량이 40mg/ℓ 이상인 온천
  - **철온천** : 철(Fe)성분의 함량이 10mg/ℓ 이상인 온천
  - **구리온천** : 구리(Cu)성분의 함량이 1mg/ℓ 이상인 온천

## □ 온천공검사 및 신고수리 추진체계



## □ 온천전문검사별 검사비

온천전문검사별 검사비의 상한은 아래와 같으며 상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름

- (산출예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재료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합한 상한액

\* 온천전문검사기관 견적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각 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산출

### < 검사대상 >

#### ① 온천부존조사

- (상한액) 9,412,316원

- (수행과업) 지형 및 수계조사, 지질 및 지질구조조사, 인근지역 온천현황 조사, 시추공에 대한 굴착계획, 보고서 작성 등

#### ② 온천공검사(1개공)

- (상한액) 32,868,742원

※ 온천공 조사에 필요한 수중모터펌프 등 설치, 발전기 등 소요되는 경비는 의뢰자 부담이며, 의뢰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수행과업에 따라 협의 산정

- (수행과업) 지하수위관측, 물리검층, 수중모터펌프 설치시 입회, 단계양수 시험, 장기양수시험, 보고서작성 등

#### ③ 온천공영향조사(조사공1개, 관측공 2개 이하)

- (상한액) 47,707,139원

※ 온천공 조사에 필요한 수중모터펌프 및 설치비, 발전기 등 소요되는 경비는 의뢰자 부담이며, 의뢰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수행과업에 따라 협의 산정

- (수행과업)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등

④ 온천공영향조사(조사공1개, 관측공 3개 이상)

- (상한액) 54,697,626원

※ 온천공 조사에 필요한 수중모터펌프 및 설치비, 발전기 등 소요되는 경비는 의뢰자 부담이며, 의뢰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수행과업에 따라 협의 산정

- (수행과업)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등

⑤ 온천자원평가조사(온천발견신고공 제외 2개공 기준)

- (상한액) 162,868,826원

※ 온천공 조사에 필요한 수중모터펌프 및 설치비, 발전기 등 소요되는 경비는 의뢰자 부담이며, 의뢰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수행과업에 따라 협의 산정

- (수행과업)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온천수영향범위조사(지구답사, 원격탐사, 지질조사, 물리탐사, 수리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등

\* 온천공영향조사는 공 간의 영향을 고려한 적정양수량 산정을 위해 필요

⑥ 정기온천자원조사(1개공)

- (상한액) 12,360,000원

※ 장비교체 · 동력사용 · 수위관측관설치 등 조사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의뢰자 부담

· 동일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조사공이 있는 경우 두 번째(2번째) 조사공 부터 조사비를 20% 이내 감할 수 있음

· 온천자원관측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비용의 20% 이내 감할 수 있음

- (수행과업) 온천수사용량 조사, 지하수위 관측조사, 성분검사, 보고서 작성 등

※ 수행과업은 최소한의 조사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⑦ 정기온천자원조사(전체 지구)

- (상한액) 334,717,244원

※ 장비교체 및 동력사용 등 시험에 필요한 각종 부대경비는 의뢰자가 부담하며, 지하수위관측공은 5~6개 공을, 양수시험은 5개 공을 기준으로 함(추가되는 각 공에 대한 금액은 별도 협의 산정)

- (수행과업) 기본현황조사(지구답사, 온천공현황조사, 온천수사용량 조사), 지하수위 관측조사, 양수시험(성분검사), 적정양수량 분석, 보고서 작성 등

※ 수행과업은 가장 일반적인 조사항목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항목을 추가함



## IV. 온천전문검사 운영절차

### 1 목적 및 관련법령

#### 1-1. 목적

- 온천법령에서 정한 온천전문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특)한국 온천협회(이하 “온천협회”라 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온천전문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조사과정에서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

#### 1-2. 관련법령(온천법)

-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②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6조(행정자치부 소관)
- ② 「온천법」 제2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관측 사무를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 2 온천전문검사의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

### 2-1. 위탁의 대상

- 온천전문검사 : 온천부존조사,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온천자원 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검사 등
-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수위변동실태 조사 등
  -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 2-2. 위탁운영 체계

- 온천전문검사가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이 온천전문 검사기관과 검사비용을 결정한 후 온천협회에 위탁
- 온천협회는 위탁받은 해당전문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 의뢰받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약정기일내 검사보고서 초안 작성·제출
- 온천협회는 학술위원회 검토를 거친 최종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제출
  - 최종 검사보고서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 및 한국온천협회의 직인을 병행 날인하고 학술위원회 검토서를 필히 첨부

### 2-3. 위탁계약 체결

- 검사비용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온천전문검사별 상한액을 참고하여 당사자간 자율 계약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원가계산의 작성 등)에 의함

### 2-4. 운영사항의 관리·감독

- 온천협회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온천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온천전문검사 위탁 운영사항의 전반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
- 행정자치부장관은 규정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발생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온천협회 또는 온천 전문검사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

### 3 온천전문검사 협의회 구성·운영

#### 3-1. 목 적

- 온천전문검사의 위탁 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운영 등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3-2. 임원 구성

- 협의회장 : 온천협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
- 위 원 : 온천전문검사기관(온천협회 특별회원 기관)의 대표 (공공기관인 경우 관련자)를 위원으로 구성
- 간 사 : 온천협회 사무처장
  - ※ 협의회는 행정적·기술적 자문 등을 위해 학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음

#### 3-3. 회의 소집

- 정기 회의 : 익년도 온천전문검사 수요에 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관리를 위하여 연말 또는 당해 연도 초에 소집
- 수시 회의 : 현안 또는 긴급사항의 발생이나 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협의회장이 소집

#### 3-4. 회의록 작성·보관

- 간사는 정기·수시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10년 이상 보관

#### 3-5. 의결의 효력

- 협의회 의결효력은 의사록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의 발생이나 신속한 회의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결정 후, 협의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함

## 4 위탁운영 행정지원

### 4-1. 학술위원회 설치·운영

- 온천전문검사 위탁운영의 감리·감독 및 기술자문 역할 수행
- 온천전문검사의 효율성 제고와 조사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절차 등 제정·시행
- ※ 학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온천협회 정관으로 규정

### 4-2. 자료의 보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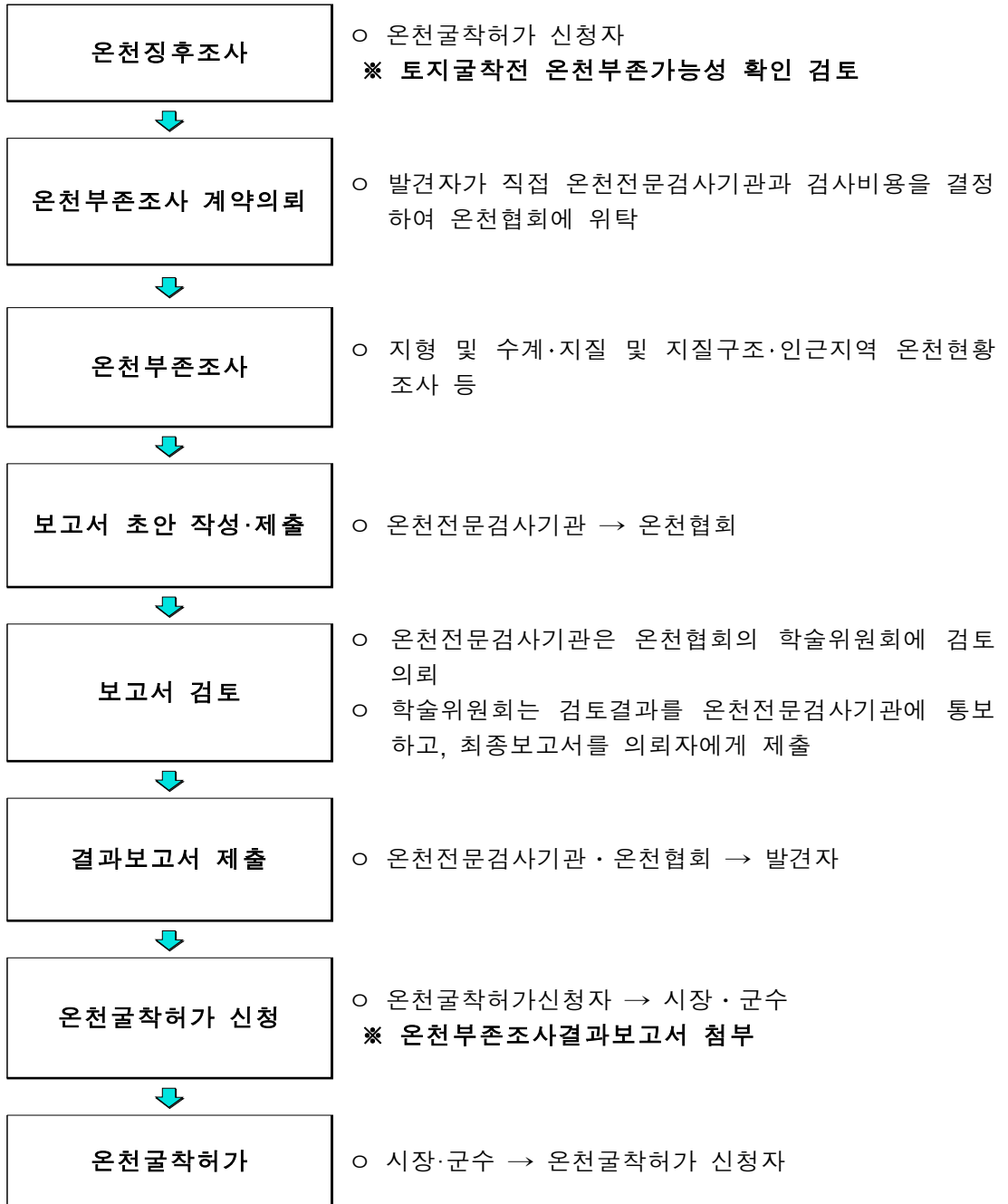
- 온천협회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및 각종 조사결과를 기재한 온천전문검사대장을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존·관리
  - 특히, 5년 주기 정기온천자원조사의 누락 및 지연 시행 방지를 위해 시기도래 6개월 전에 해당 지자체에 사전 통보
- 온천자원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등을 포함한 온천전문검사 결과는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에 활용

### 4-3.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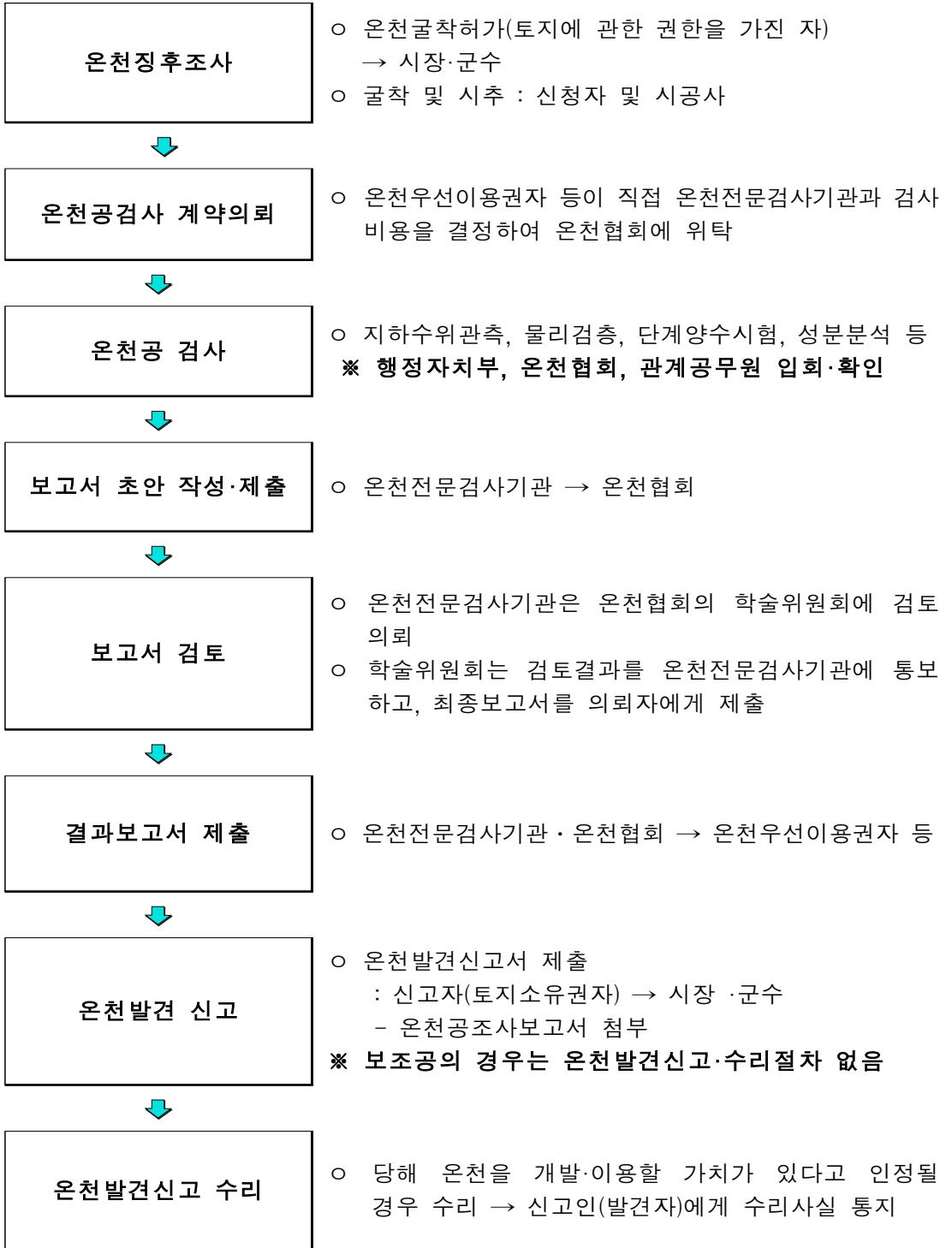
- 온천전문검사 위탁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 계정과목으로 운영
-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온천전문검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단,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 5 온천전문조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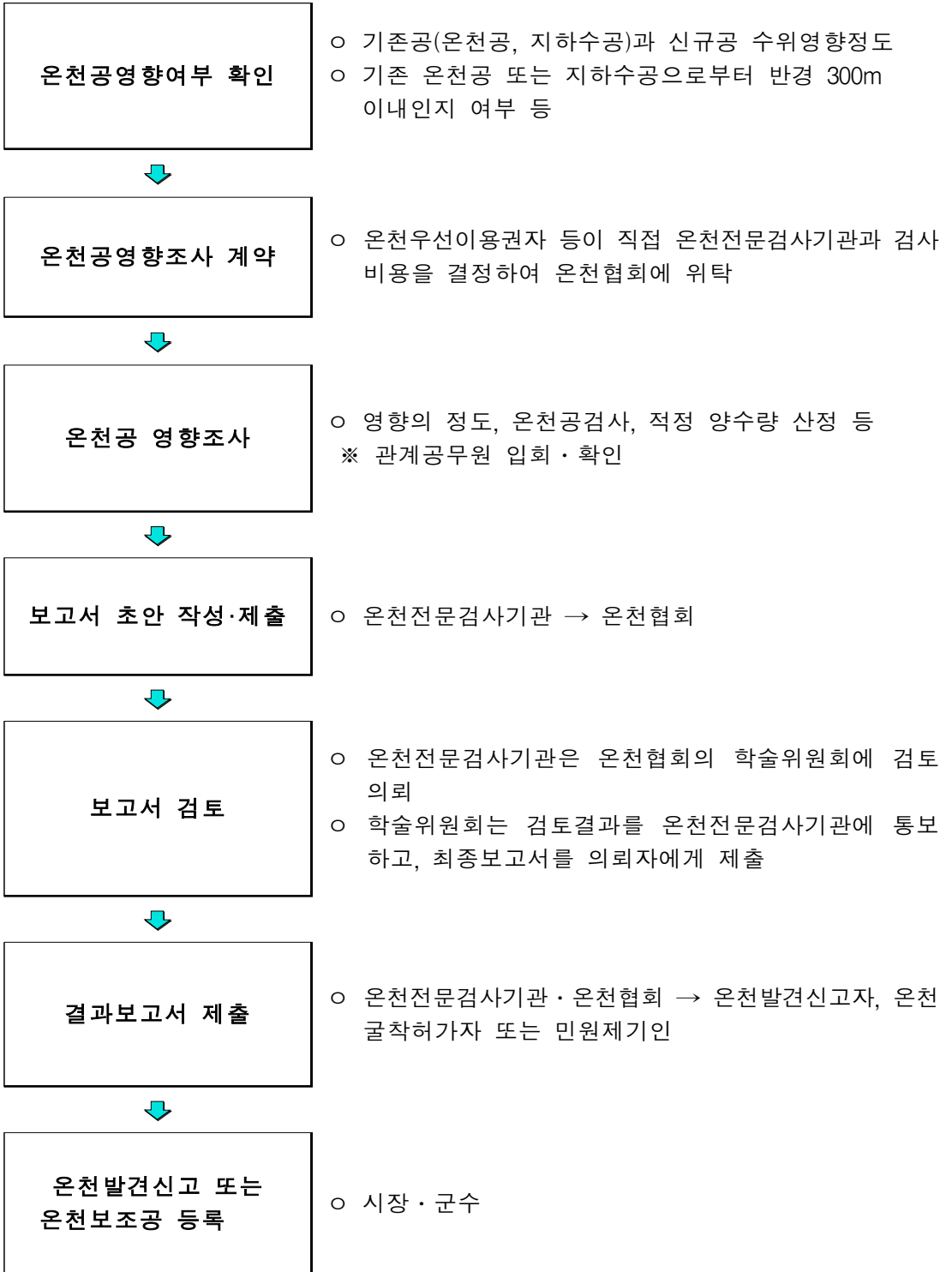
### 5-1. 온천부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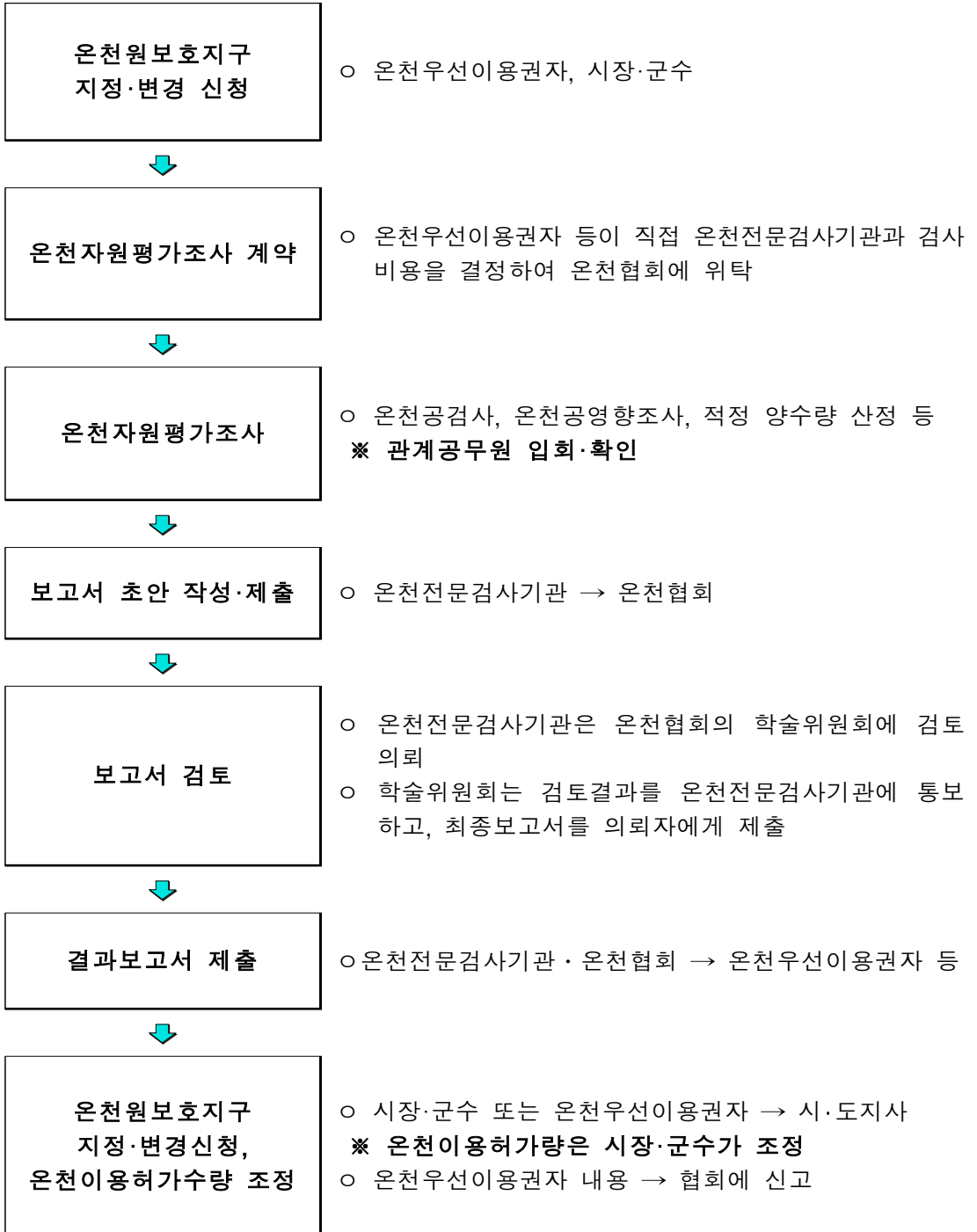
## 5-2. 온천공검사



### 5-3. 온천공영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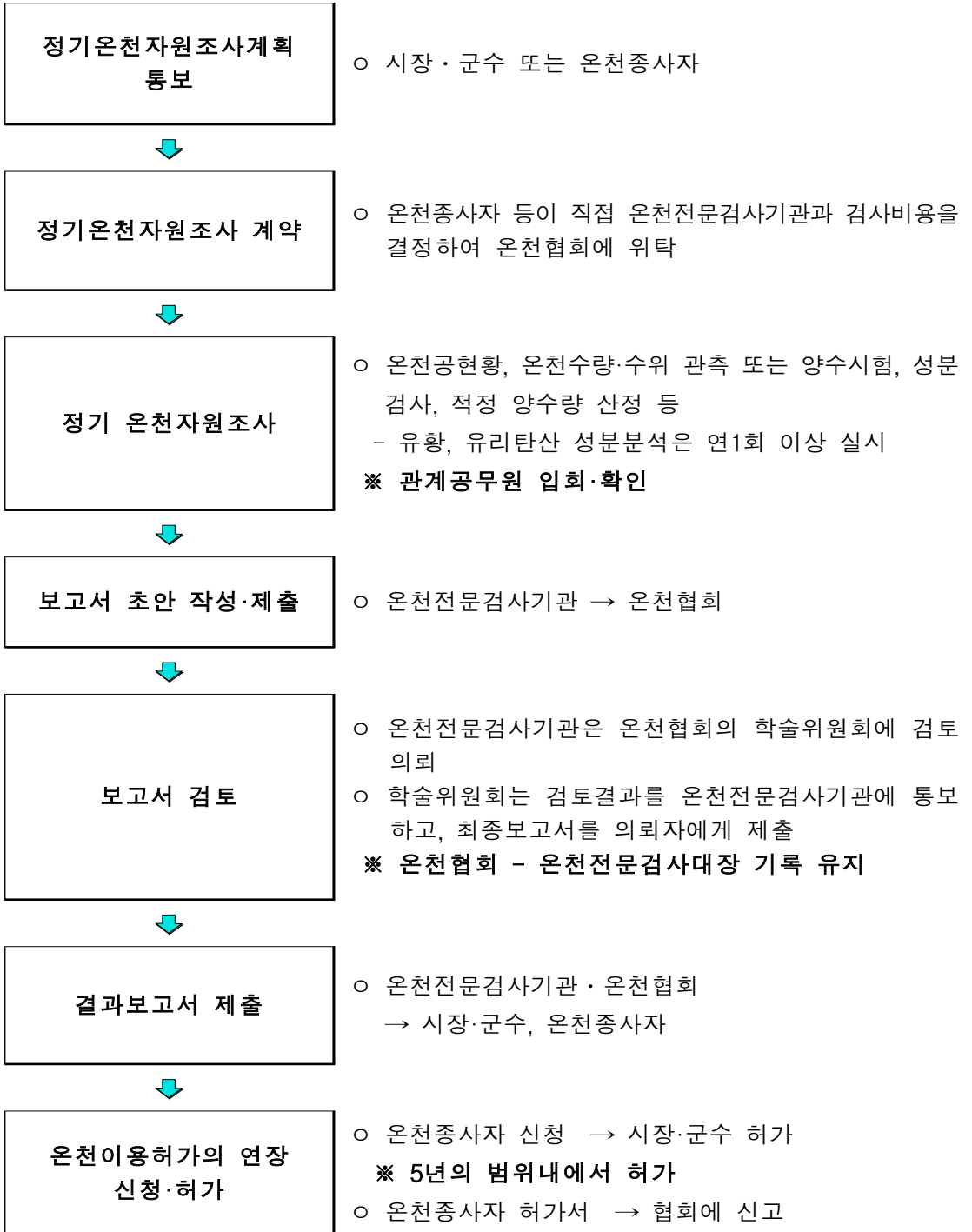


## 5-4. 온천자원 평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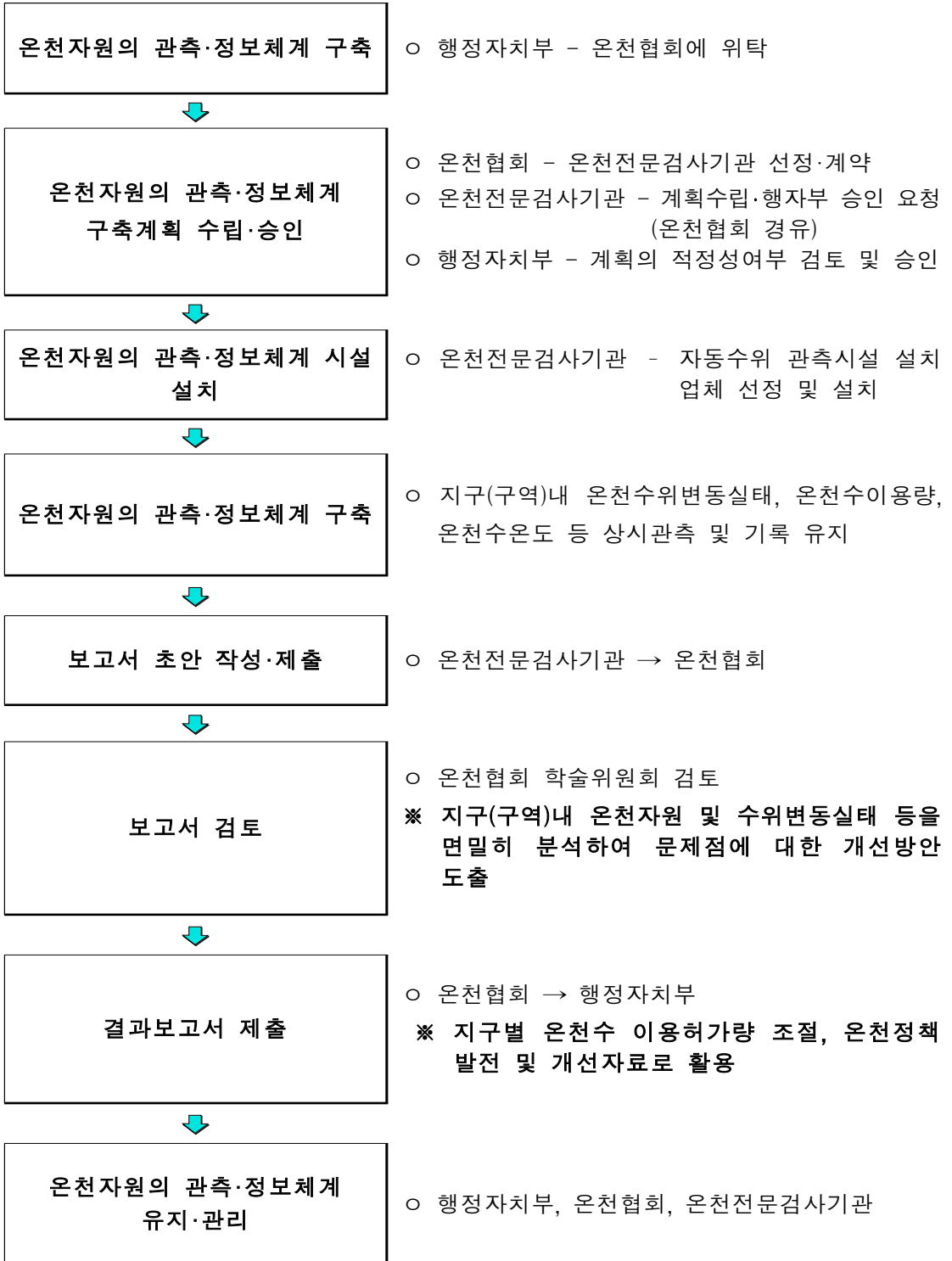




## 5-5. 정기온천자원조사



## 5-6.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별표 5]<개정 2010.8.11.>

❖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관련)

1. 온천공 검사방법

- 가. 물리검층, 온도검층
- 나. 단계양수시험
- 다. 장기양수시험(48시간)
- 라. 성분검사

2. 온천공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가. 개요(위치 및 검사범위 등)
- 나. 지형 및 지질
- 다. 검사공 현황 및 수위변화
- 라. 물리검층과 온도검층
- 마. 단계양수시험
- 바. 장기양수시험
- 사. 양수시험시 수온·간이수질 변화
- 아. 성분분석 및 해석
- 자. 종합결과(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성분 등)
- 차.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별표 1의2]<개정 2016.12.15.>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온천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1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3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4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4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5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7.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6호	등록취소	



##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2호(2016.3.20.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온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실시기관)** ① 온천종사자 교육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 온천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교육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및 회계 등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시간)** ① 온천종사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온천종사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등의 온천종사자로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 및 교육 대상자 인적사항을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의 교육을 가급적 총회 등 온천종사자 소집이 용이한 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4조(교육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온천에 관한 일반사항

가. 온천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온천의 기준과 온천자원의 해설과 운용

다. 온천개발절차 및 관련규제 사항

라. 온천성분검사, 온천영향검사, 온천자원조사 등 온천검사에 관한 사항



- 마.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 바. 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
2.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
  3.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4. 온천행정 등 기타 온천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의 편찬 등)** 협회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온천종사자의 거주지역과 업무 및 업종 유형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온천업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 제9조(수강료)** ① 협회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내용,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협회장이 결정한다.
  - ③협회장은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① 온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온천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 1년 범위 안에서 교육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예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시장·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온천중사자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연기원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① 협회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기타 온천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협회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보고)** ① 협회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온천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

## 5. 교육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

②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협회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 참석교육)** ①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중위생관리 책임자지정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원)** ① 시장·군수는 신규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이용허가자의 지위승계신고 및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온천종사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군수에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군수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처리)** ① 협회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한다.

②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온천종사자 교육소집 통지서

수신 : 온천종사자(대표)

온천법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0000년에 실시하는 온천종사자교육 소집을 통지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불참시에는 온천법 제 37조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구분	1차	2차	3차	4차
교육일시				
교육장소				
준비물				

20 년 월 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회장



- 온천종사자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
-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으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일지라도 온천종사자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 수료증

(온천종사자 교육)

온천명 :

영업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귀하는 온천법 제26조에 따라 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0000년도 온천종사자 교육을 수료  
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회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

교육일자 :

번호	온천명	소재지 (시·군까지)	대표자 성명	참석자		접수자		비고
				성명	서명	교육비	수료증	





## 교육실시결과보고서

20 . . .

수신 : 행정자치부장관, 지자체장

제목 : 온천종사자 교육실시 결과보고

온천법 제26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실시현황

구분 시·군·구별	대상 인원	참가자		불참자			비고
		인원	비율(%)	계	신고	무단	
계							

라. 참가자 및 불참자 인적사항.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회장 (인)

### 3.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도·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보양온천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리적·경제적 여건, 수요전망 및 기대효과
3. 온천수의 특징, 개발·이용계획 및 보전·관리계획(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포함)
4.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환경 정비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5. 주변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개발·활용계획
6. 사업의 시행주체,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8.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보양온천 운영방안
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2. 자금의 우선 융자·지원, 각종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경감
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9호, 2008.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74호, 2010.6.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51>까지 생략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56호, 2014.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2>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14.1.29>

**보양온천 지정기준** (제2조제2항 관련)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지정기준	지정조건	비고
온천수	온도	온도	용출온도 35℃ 이상		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
	성분	총고용물	용출온도 25℃ 이상 총고용물함량 1000mg/ℓ 이상		
		유황	용출온도 25℃ 이상 총유황(H <sub>2</sub> S, S <sub>2</sub> O <sub>3</sub> , HS <sup>-</sup> ) 함량 1mg 이상		
		유리탄산	용출온도 25℃ 이상 유리탄산 250mg/ℓ 이상		
수량	이용허가수량	1일 최대이용 인원(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최소 210m <sup>3</sup> /일 이상 ┌ 운동욕장 50m <sup>3</sup> /일 이상 └ 온천욕장 160m <sup>3</sup> /일 이상	절대조건	
보양온천시설	시설	건강시설 (총연면적 1,000m <sup>2</sup> 이상)	1.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 2. 운동욕장(5가지 기능) ◦ 보행욕 ◦ 보디 샤워 ◦ 넥샤워 ◦ 플로팅 ◦ 릴렉스 라이닝 3. 운동실 4. 릴렉스 존 5. 수영장	· 2급 이상 응급구조사 상주 · 욕조바닥 면적 100m <sup>2</sup>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 5종 이상 운동기구 · 수면실 외 교류 장소 · 길이 25미터 이상 또는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바닥면적 160m <sup>2</sup>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절대조건
		기본시설	1. 프론트 로비 2. 탈의실 3. 온천욕장 4. 사우나실 5. 찜질방 6. 노천탕 7. 다목적 홀 8. 식당	· 고온탕, 온탕, 냉탕 등 욕조바닥면적 50m <sup>2</sup> 이상 · 건식, 습식	
		부대시설	1. 숙박시설 보유 또는 근접거리(1,000미터 이내)에 이용가능 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체휴관계가 있을 것		
보양온천환경	주변환경	필수사항	1. 야외공기 청정도 2. 실내공기 청정도 3. 실내 소음도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절대조건
		권장사항	1. 경관이 수려 2. 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 3. 주변 위생처리 상태가 양호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5. 상수도시설 상태 6.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7. 재해에 대한 안전도 8.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4분류하여 100% 중 60% 이상

[별표 2]

**보양온천 표시**(제5조 관련)



비 고

1. 보양온천 표시 : 파란색(Cyan 100%)

2. 글씨 : 흰색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음.

※ 보양온천 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음.





## 4. 온천법령집

